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2020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CONTENTS

들어가기

발간사	06
협동센터 비전&미션	08
협동센터 소개	10
숫자로 보는 2019 협동센터	14
협동조합 설립 현황	16

PART1. 상담사례

●○ 기본이해	
1. 정의	28
2. 협동조합연합회	33
●○ 설립준비	
1. 사업	38
2. 명칭	39
3. 정관	42
4. 출자금 및 세금	47
5. 조합원	50
6. 임원	54

●○ 설립절차	
1. 총회	58
2. 설립신고	61
3. 공증	62
4. 설립등기	63
5. 사업자등록	67
●○ 변경절차	
1. 변경신고	69
2. 변경등기	72
3. 사업자등록 정정	75
4. 해산 및 청산	76
5. 조직변경	80
●○ 운영일반	
1. 기관	87
2. 조합원	91
3. 출자 및 배당	93
4. 회계·세무	97
5. 인사·노무	101
6. 사업운영	107
7. 운영기타	114

PART2. 사업운영을 위한 필요정보

○● 사업운영을 위한 필요정보	
1. 학원의 설립·운영	118
2. 커피전문점의 영업	122
3.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	126
4. 음식점의 영업	129
5. 어린이집의 설치	134
6. 특허의 등록	137
○● 협동조합 지원제도	
1.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41
2. 사회적협동조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43
3. 총회의사록 인증(공증)면제	146
4. 여성기업	148

PART3.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15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20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220

부록

전문상담 자문단 소개	230
팀소개	238





발간사



협동센터 비전&미션



협동센터 소개

2019

숫자로 보는 2019 협동센터



협동조합 설립 현황

들어가기

발간사 06

협동센터 비전&미션 08

협동센터 소개

상담지원 10

교육지원 11

창업·경영지원 12

정책기획 13

홍보·정보제공 13

숫자로 보는 2019 협동센터 14

협동조합 설립 현황

누적 현황 16

변화 추이 20

업종 현황 22

일반협동조합 현황 25



벌써 4번째입니다.

뜨거워지는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기억하며 상담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우리의 작업이 현장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4번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더해 갈수록 책임감이 커집니다.

한글자 한글자 더하고 빼가며 혹시 잘못 쓴 것은 없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실었는지 묻고 물어가며 한 장 한 장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공을 들여 사례집을 발간하는 이유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사실이든 설사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2020년을 살아가는 협동조합인들의 이야기는 소중하고,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립에서 운영까지 현장의 질문은 늘 다양하고 새롭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그 사례로부터 배웁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개선의 방향은 없는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꼭 개선해야 할 것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나누고 묻고 다시 답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록이 완성된 것은 아니나 협동조합의 현장에서 또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센터의 역사를 잇고 다음을 기약하며 이 땅의 협동조합들을 위한 4번째 기록을 발간합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2020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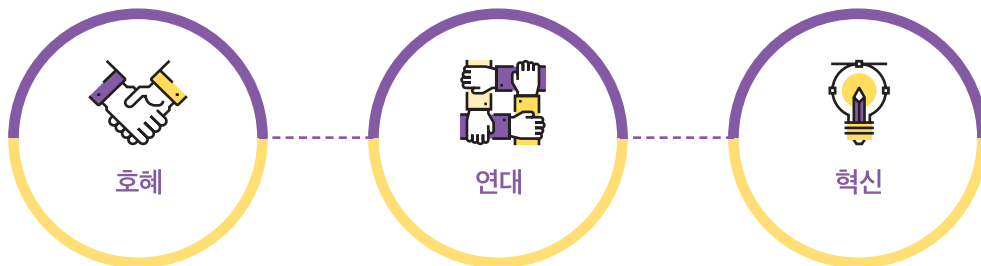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장 강민수

협동센터 비전&미션

비전 VISION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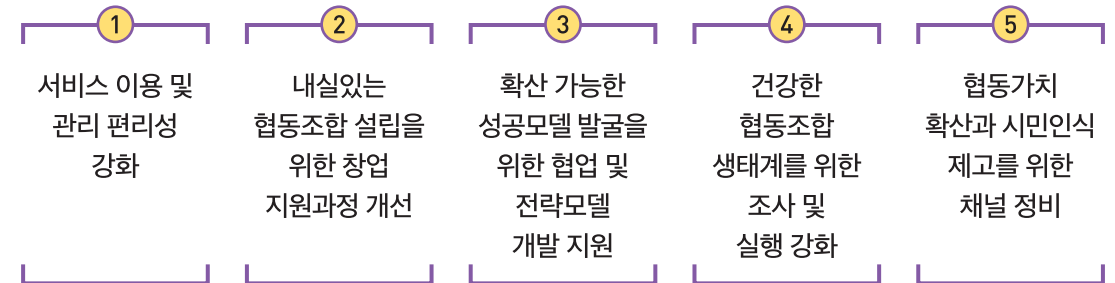
핵심가치 CORE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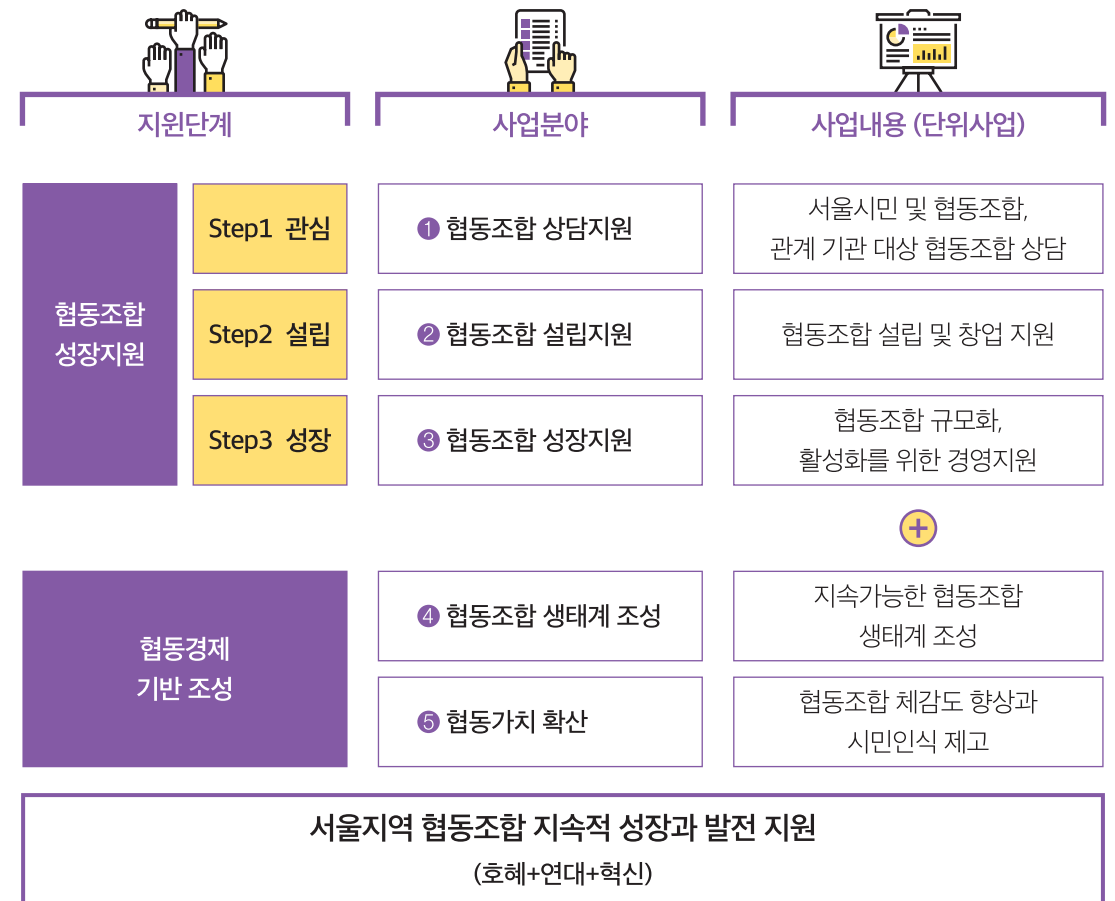
사업방향 BUSINESS DIRECTION

협동조합의 내실화 및 규모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핵심과제 CORE TASK



추진계획 PROMOTION PLAN



협동센터 소개

상담지원

협동조합이 궁금한 일반시민, 예비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육지원

협동조합의 자립성장과 운영내실화를 위한 맞춤교육을 제공합니다.

• 정기 협동조합 입문교육

협동조합 개념, 가치, 특성, 설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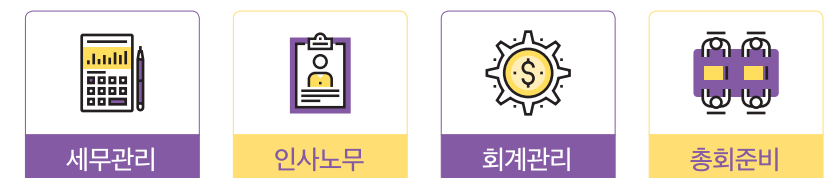
• 찾아가는 협동조합 입문교육

협동조합 개념, 가치, 특성, 설립절차



• 협동조합 맞춤교육

연간 협동조합 운영상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교육



모든 교육 일정 및 신청은

홈페이지(www.15445077.net) → 교육/공모신청 메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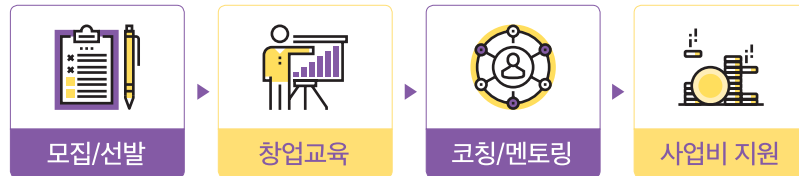


문의 성장지원팀 02-383-8323

서울시 협동조합의 준비된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 초기 성장 지원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창업교육부터 코칭, 선배멘토링, 사업비 지원까지 등 창업 초기 지원



일정 연 1회 선발(3월)

• 협동조합 성장기 활성화 지원

- 성장단계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 협동조합 이·동업종 네트워크 공동사업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기본법 개별 단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협의회, 콘소시엄(협동조합 3개이상)

일정 연 1회 선발(2~3월)

• 협동조합 기술 및 콘텐츠 개발 지원

신사업 기술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개발비 지원



일정 연 1회 선발(2~3월)



모든 공모 일정 및 신청은

홈페이지(www.15445077.net) → 교육/공모신청 메뉴 참고



문의 성장지원팀 02-383-8324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동향 및 이슈를 발굴합니다.

• 제도개선 토론회

협동조합 정책과제, 이슈 등 발굴·공유

일정 연 2회 개최(4월, 10월)



제안 홈페이지(www.15445077.net) → 제도개선제안 게시판

사례발굴을 통해 협동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과 협동조합 간 소통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청년기자단

협동조합 이해 및 기사작성 교육, 협동조합 취재 및 기사배포, 네트워킹 등

대상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20~30대 청년

• 협동조합 작은행사 지원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시민 참여행사 지원

일정 연 1회 선발(3월)

•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협동조합 온라인 뉴스레터, 카드뉴스, 안내 책자, 대외협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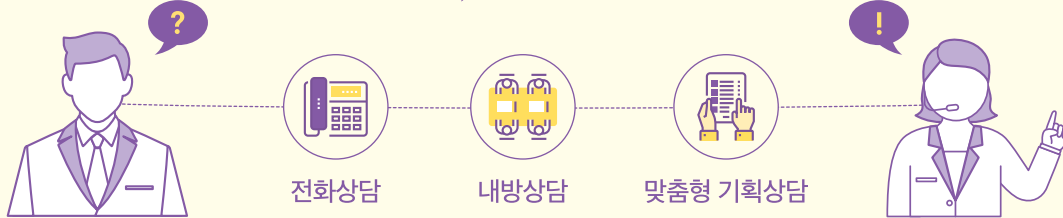


문의 행정지원팀 02-383-8380

숫자로 보는 2019 협동센터

협동조합 상담

7,794건



교육이수

협동조합 입문교육, 설립준비교육,
맞춤교육, 경영전략과정 등

1,293명



센터가 만난 협동조합

상담,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협동조합

1,851조합

온라인에서 만난 협동센터

531,983회



센터와 함께 한 기관

19개 기관



5개 기관

상담

-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사)신나는조합
- 대한법무사회



2개 기관

교육

- 성공회대학교
- 서울테크노파크



2개 기관

창업지원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 기관

작은행사

- 카카오키가치
- 신흥중앙회
- (주)오마이컴퍼니
- 세이프넷지원센터
- 해피브릿지협동조합



3개 기관

정책기획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개 기관

홍보및정보제공

- (주)이로운넷
- (주)드림미즈

작은행사와 함께 해주신 분들

48,0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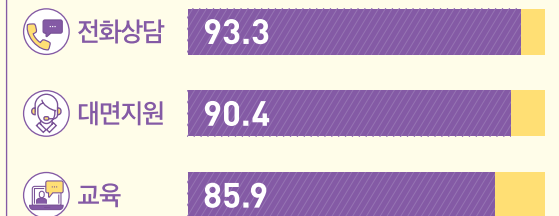
11개 선정



협동조합 총 후원금

35,152,900원

2019년 센터 서비스 만족도 점수



센터 식구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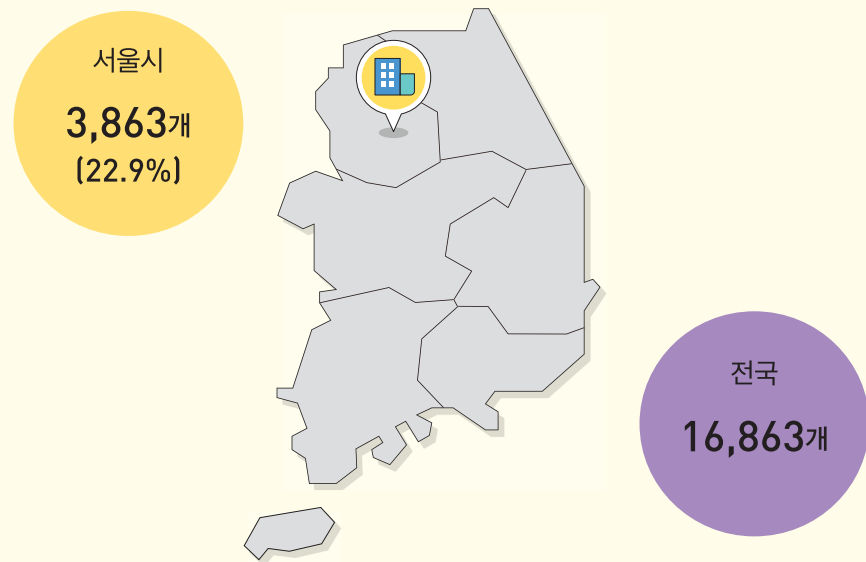


협동조합 설립 현황

이 자료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설립신고 및 인가 과정을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포함하며, 편의를 위해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료출처]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자료 : 서울시사회적경제과 / 전국 협동조합 설립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coop.go.kr)

01 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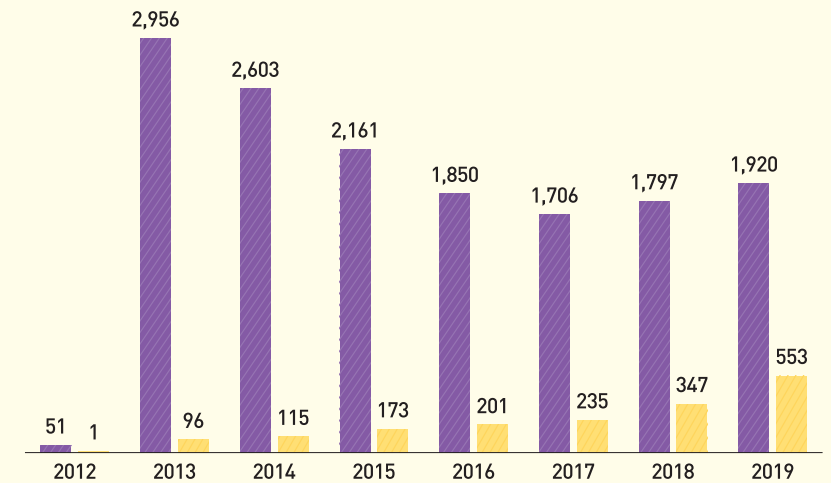
전국 협동조합 가운데 서울 소재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2017년 24.7%, 2018년 23.9%, 2019년 22.9%)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16,863개입니다. 이중 서울 소재 협동조합은 3,863개로, 전년(3,468개) 대비 11.38%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총 331개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257개) 보다 28.7% 늘어난 것입니다. 설립 추이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기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업과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전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

단위 : 개
(2019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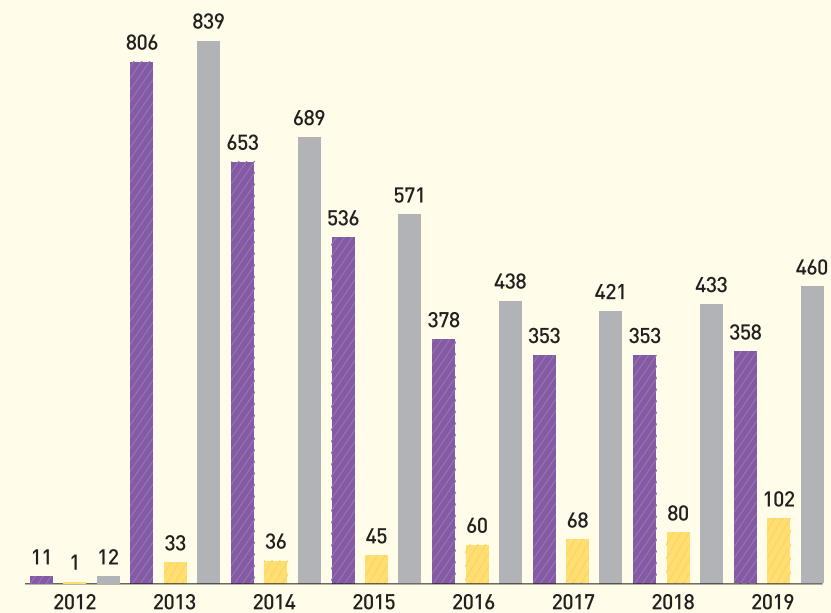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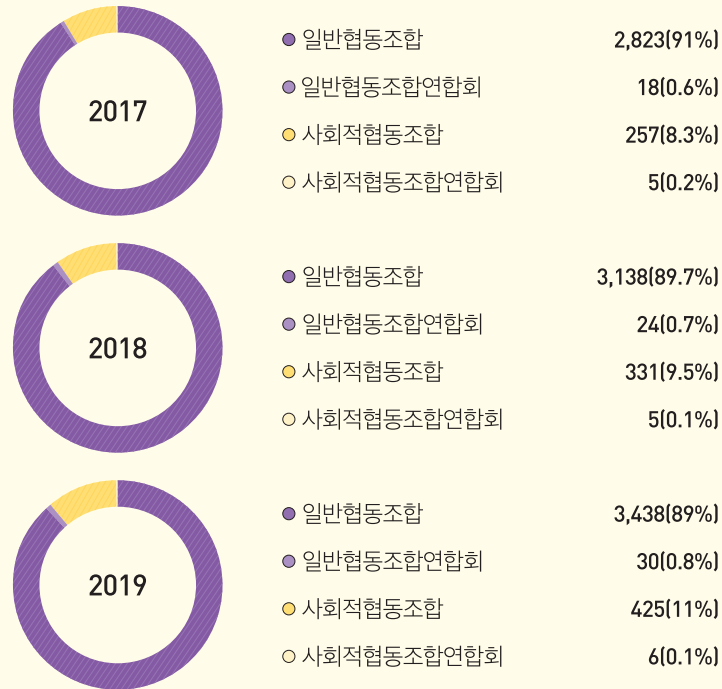
단위 : 개
(2019년 12월 말 기준)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합계



종류별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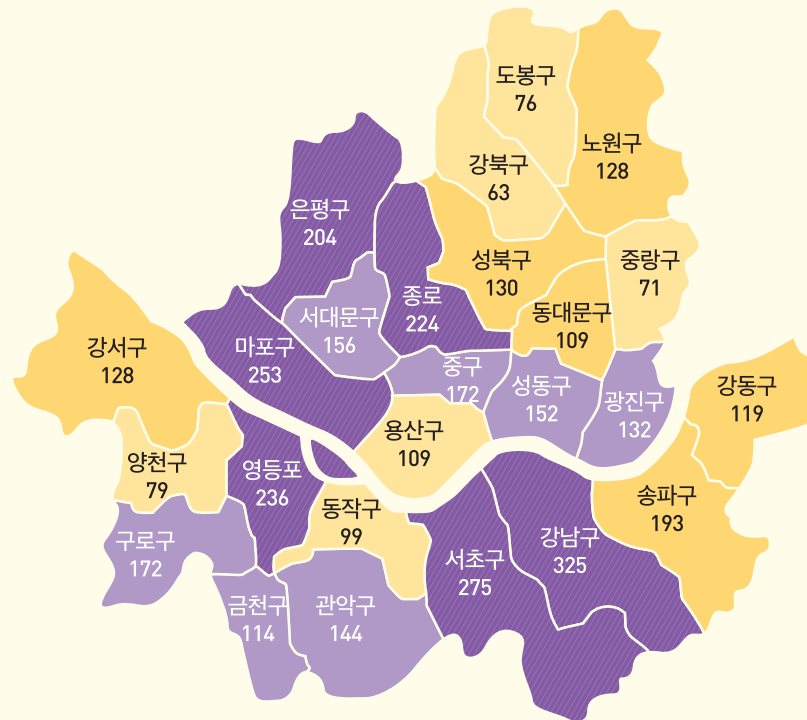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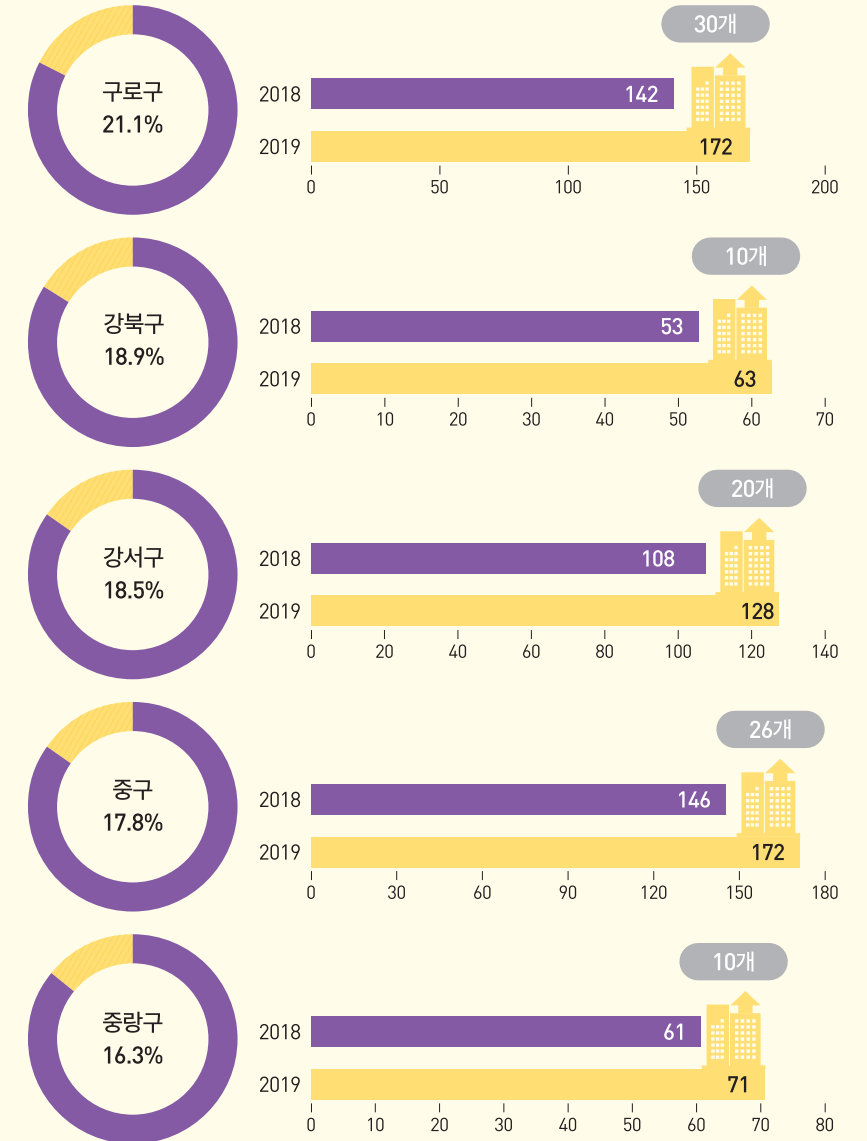
자치구별 설립 현황

- 1~6위
- 7~13위
- 14~19위
- 20~25위

- 1위 강남구 325개(8.9%)
- 2위 서초구 275개(7.0%)
- 3위 마포구 253개(6.4%)
- 4위 영등포구 236개(6.0%)
- 5위 종로구 224개(5.8%)



협동조합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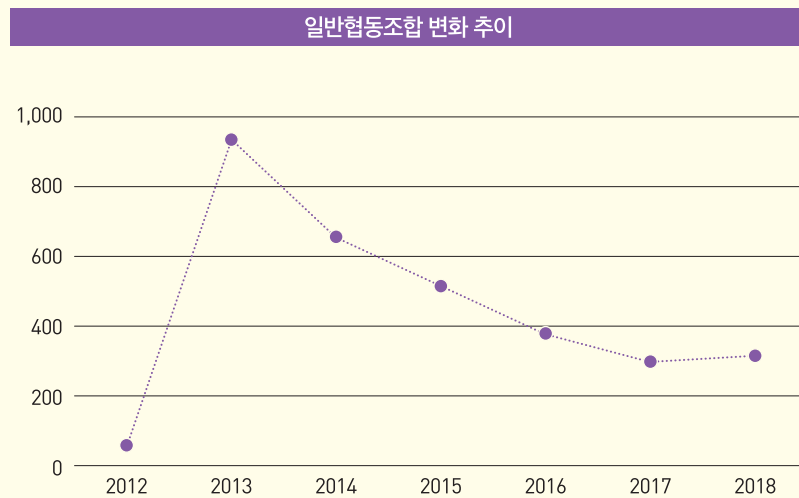


전체 협동조합 종류를 포함한 설립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강남구(325개)와 서초구(275개)가 1, 2위로 3년째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마포구(253개)와 영등포구(236개), 종로구(224개)가 뒤를 이었습니다. 증가율의 경우, 협동조합 수가 많지 않은 지역들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지역은 구로구(172개)로, 전년(142개)보다 21.1%(30개)나 늘어났습니다. 자치구 가운데 가장 협동조합 수가 적은 강북구(63개)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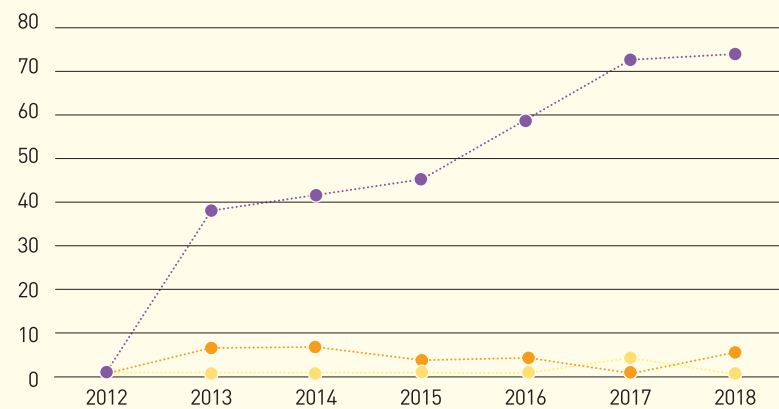
02 변화 추이

종류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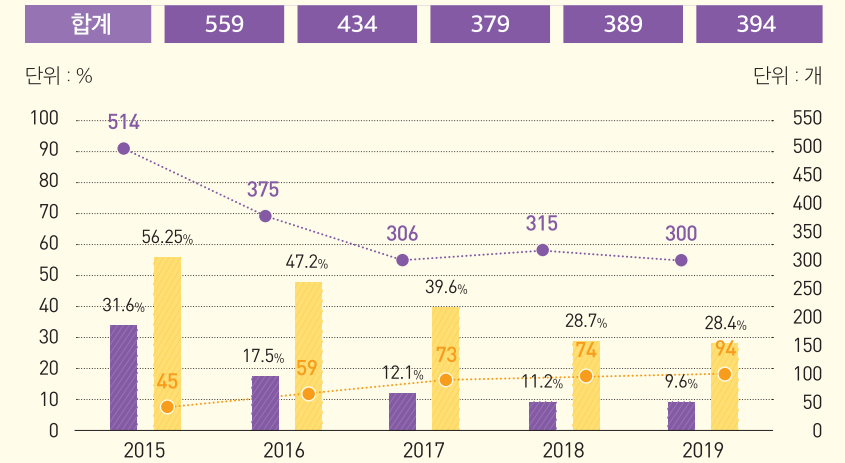
단위 : 개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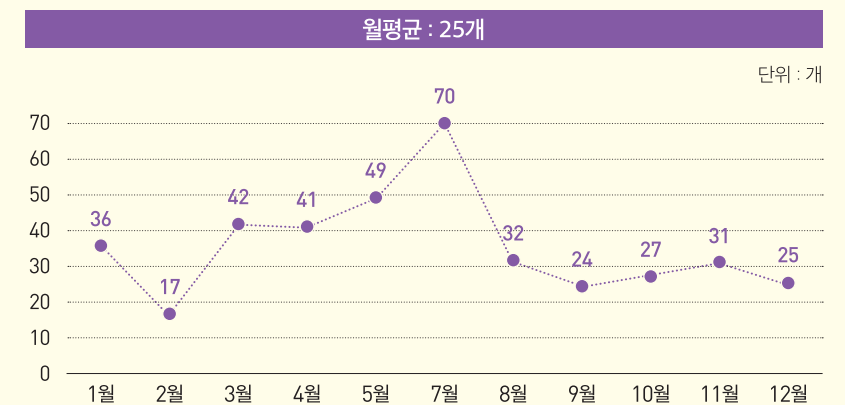
※ 증감수치엔 해산 및 전출한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개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	3	0	5	6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1	2	0	1
합계	4	4	2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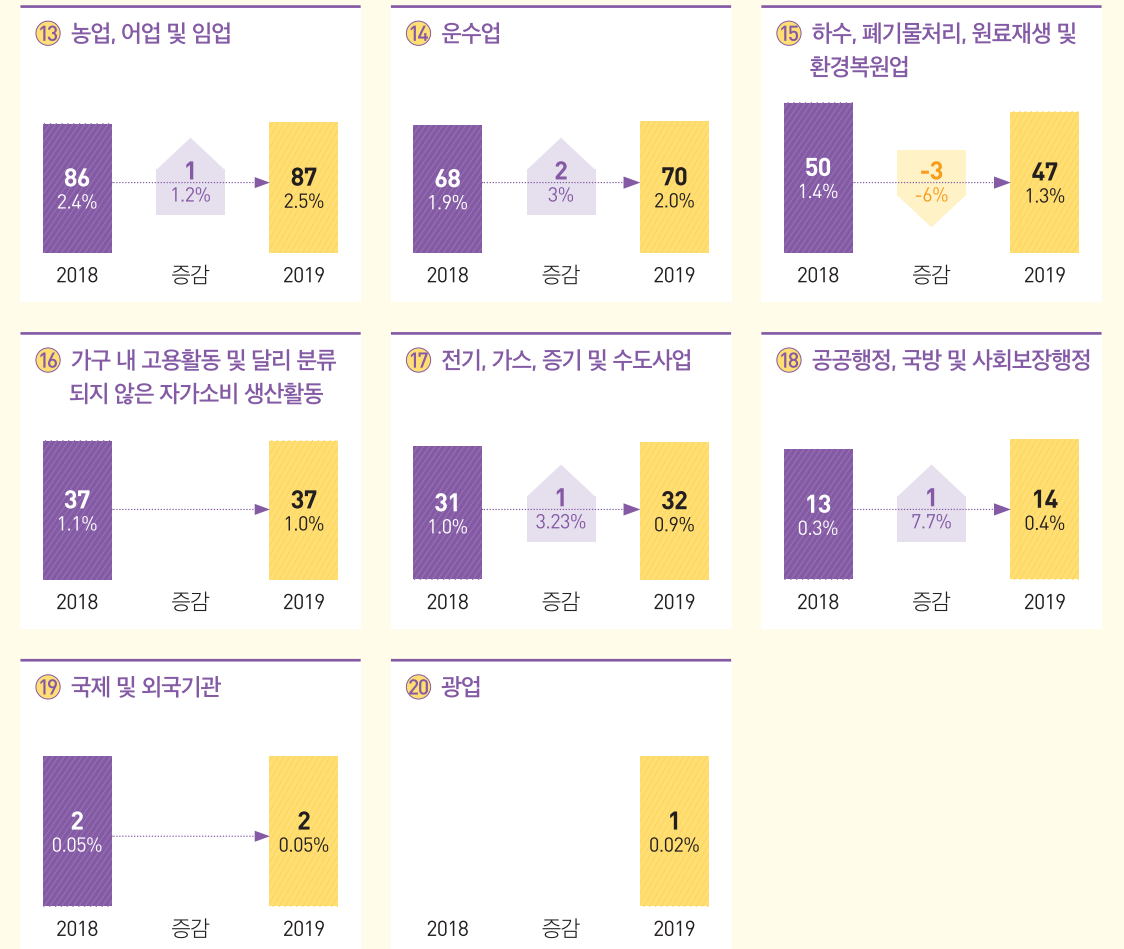
2019년 일반협동조합은 300개가 늘어나 월평균 25개가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94개가 늘어나 월평균 7.8개가 설립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이 2013년 최고를 기록한 이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증가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증가율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인 28.4%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 월별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변화 추이



03 업종 현황

일반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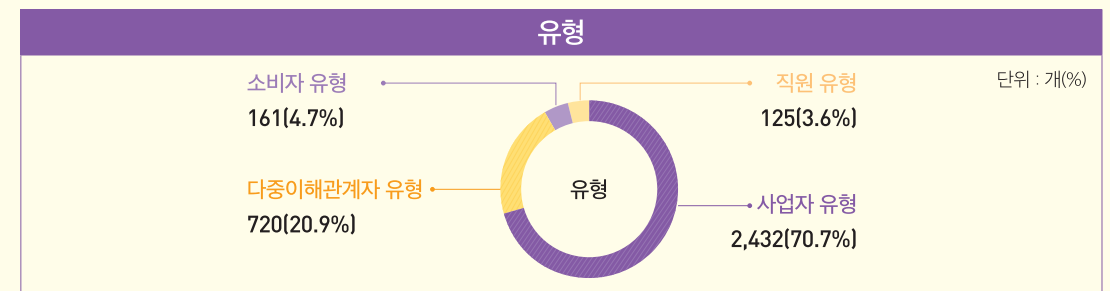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7개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업종인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7개가 줄었습니다.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입니다. 2018년보다 각각 25.7%, 2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 감소율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보다 각각 20.7%, 15.4%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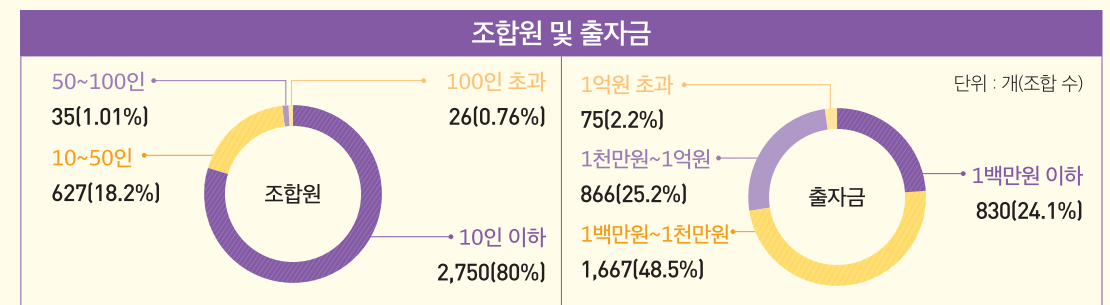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

순위	업종	조합수	비율(%)
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1	26.1
②	교육 서비스업	111	26.1
③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	8.7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3	7.7
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2	7.5
⑥	제조업	19	4.4
⑦	도매 및 소매업	16	3.7
⑧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3.5
⑨	농업, 어업 및 임업	12	2.8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2.3
⑪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1.8
⑫	숙박 및 음식점업	5	1.1
⑬	건설업	5	1.1
⑭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0.9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	0.4
⑯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0.4
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0.2
⑱	국제 및 외국기관	1	0.2
⑲	운수업	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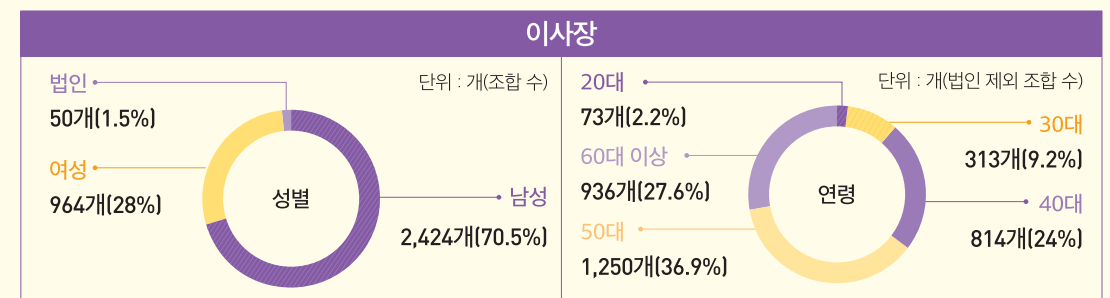
04 일반협동조합 현황



유형별로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유형(7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 소비자, 직원 유형 순이었습니다. 순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형 가운데 사업자 유형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사업자 유형의 경우 지난해(2,208개)보다 224개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사업자 유형이 0.3%p 증가하고, 직원 유형이 0.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란 두 개 분야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여 만드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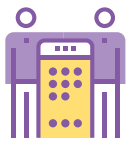
2019년은 조합원 10인 이하 협동조합이 2,750개로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협동조합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50인 협동조합 비중은 0.3%p, 50~100인 협동조합 비중은 0.04%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자금은 전체적으로 2018년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이가 1,667개(48.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사장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전히 남성 이사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보다 남녀 모두 0.1%p 증가하고, 법인 이사장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이사장에서 20대, 30대가 전년보다 각각 0.2%p, 0.5%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2018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던 60대 이상은 올해 0.9%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PART

1



기본이해



설립준비



설립절차



변경절차



운영일반

상담사례

●○ 기본이해

1. 정의	28
2. 협동조합연합회	33

●○ 설립준비

1. 사업	38
2. 명칭	39
3. 정관	42
4. 출자금 및 세금	47
5. 조합원	50
6. 임원	54

●○ 설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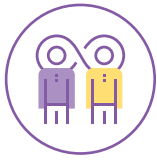
1. 총회	58
2. 설립신고	61
3. 공증	62
4. 설립등기	63
5. 사업자등록	67

●○ 변경절차

1. 변경신고	69
2. 변경등기	72
3. 사업자등록 정정	75
4. 해산 및 청산	76
5. 조직변경	80

●○ 운영일반

1. 기관	87
2. 조합원	91
3. 출자 및 배당	93
4. 회계·세무	97
5. 인사·노무	101
6. 사업운영	107
7. 운영기타	114



●○ 기본이해

1. 정의

001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설립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는 상법을 근거로 설립하는 영리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유방식, 통제제도, 수익처분 방법에 따라 차이를 구분해 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상장회사)
법인격	협동조합 기본법상 법인	상법상 영리법인
소유자	조합원(이용자 소유구조)	주주(투자자 소유구조)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소유 방식	가치변동	시장에서 수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최소설립인원	5인	1인
통제 제도	의결권	의결권
	1인 1표 - 다수의 평등한 지배	1주 1표(주식 수에 비례) - 소수 대주주의 지배
	경영기구	경영기구
	-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임원	- 주주가 선출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 처분 방법	내부유보	내부유보
	-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내부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이용배당
	-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 출자배당에 선행함	없음
	출자배당	출자배당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 실시	제한 없음

002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 사업조직입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共益)'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됩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은 행정기관에 신고로 설립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법인(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준용)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준용)
설 립	사·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
처리기간	20일 이내	60일 이상
설립등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단, 금융과 보험 업종 제외)	주사업(공익사업40%이상)과 기타사업 구분 (단,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가능)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이상
경영공시	의무사항아님(단,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30억 원 이상 일 경우 의무)	의무사항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감 독	관련내용 없음(상법등에서 준용)	- 기획재정부장관 감독, 시정조치 -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취소
기 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불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가능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자활기업과 함께 대표 사회적경제 주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법인격이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법인 설립 이후 사업 목적에 따라 인증·지정 받는 정부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설립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인증 혹은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거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 법인격은 바뀌지 않으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존속하면서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실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조직 형태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일반법 및 개별법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포함) -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 회사, 유한회사 등)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인증· 지정 요건	-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채용 - 사회적 목적실현(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외에 서비스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운영 -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기간 지출된 총노무비 대비 50%이상 -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반영(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사항 등) -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에 한함)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운영원칙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신청한 법인에 출자해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지역문제 해결 기여 및 출자회원의 70%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 영리법인 및 수익모델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각 차수별 마을기업 지정 시 최대 3차에 걸쳐 사업비 지원 - 예비마을기업 ⇨ 신규마을기업(1차년도) ⇨ 재지정마을기업(2차년도) ⇨ 고도화마을기업(3차년도)

※ 각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원 사업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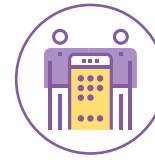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신고를 거쳐 설립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무구역, 법정 최저발기인수, 법정 최저출자금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법인격, 설립목적, 조합원의 자격, 설립요건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인격	협동조합 기본법상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비영리법인
목적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공공의 이익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기회균등 및 경제적 지위향상
설립	- 협동조합 : 시·도지사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 중앙부처 인가	주무관청 인가(중소기업벤처부 및 시·도지사)
종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중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전국조합, 지방조합) - 사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시장사업협동조합,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 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의 자격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자연인, 법인 가입가능	중소기업자 중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자 외의 자도 가입가능 * 다른업종의 조합원이 가입하는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발기인 수 및 출자요건	- 최소 5인 이상 - 출자금 상·하한 제한 없음	업무구역 및 업종에 따라 법정 최저출자금, 발기인원 기준 상이 (*p.32 설립요건표 참고)
감 독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종류	업무구역(감독기관)*	법정 최저발기인수	법정 최저출자금
협동조합 (동일업종)	전국(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8천만원
	2인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지방조합/시·도지사)	동일업종 ²⁾ 50인 이상(단,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사업협 동조합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 또는 일정지역(지방조합/시·도지사)	동일업종 30인 이상(단,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전국 또는 2인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중소벤처기업부, 시· 도지사)	사업참여자 ³⁾ 50인 이상(단, 업종 이 도·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다른업종)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 또는 일정지역(시·도지사)	사업참여자 30인 이상(단, 업종 이 도·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4천만원
	하나 또는 2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시·도지사)	5인 이상	
(동일업종)	하나 또는 2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시·도지사) ¹⁾ 동일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또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없음	3개이상 동일업종 지방조합(단,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10개 이상)	
연합회	전국 (업종연합회/중소벤처기업부)		

- 1) 업무구역 : 조합원의 소재 범위(법 제6조)/ 시·도 :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동일업종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상 동일업종
 3) 사업참여자 : 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자(정관례 고시 참고)



●○ 기본이해

2. 협동조합연합회

001

법3

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에 외국 국명이나 기초지자체, 지역명, 자치구, 동명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연합회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 같은 외국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군, 읍, 면, 동, 리, 자치구명 등은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002

☞ 법71-82

☞ 법114-115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모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협동조합 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모두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은 필수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차이점은 발기인구성, 법인격, 설립절차의 세 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기획재정부장관 인가
처리기간	20일 이내 신고 확인증 발급	60일 이내 인가
발기인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의결권 및 선거권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부여 가능, 대리인이 행사 불가	
임원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함)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회원내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은 필수 -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 가능	- 회원내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은 필수 -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 가능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적립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이상 적립
배당	잉여금 배당가능	잉여금 배당불가
감독	관련내용 없음(상법 등에서 준용)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관련 규정 존재

003

☞ 법80

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회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 총액이 1억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료를 납입한 회원 협동조합에 한하여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은 공제사업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004

💡 자문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이 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겸직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과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이사장 겸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연합회 기관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함으로, 협동조합 연합회의 이사장이 타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2020년 3월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갖춘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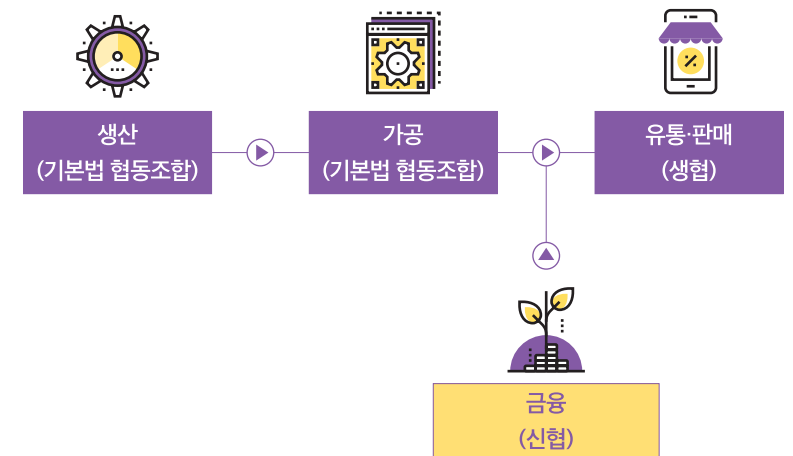
참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구성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필수로 수행해야 하며, 그 이외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자율적으로 정관에 정하여 수행합니다.

참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공동사업 예시



- 생협 : 조합원 평가단 운영, 상품성 개선사업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제품의 생협 입점 지원
- 신협 : 사회주택 공급지원을 위해 주택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주택 사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및 입주자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 설립준비

1. 사업

001

업종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특정사업 (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관계법령의 적법여부나, 사전에 인허가 사항 필요여부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002

법93, 법94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6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유형은 총 6가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사업 유형 판단기준

구분	유형	내용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인 경우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경우
3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경우
4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인 경우
5	기타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인 경우
6	혼합형	위 사업유형 중 기타공익증진형을 제외한 2개 이상을 혼합하는 경우



●○ 설립준비

2. 명칭

001

자문

관내에 이미 가나다협동조합이 있는데, 가나다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등기가 가능할까요?

관할 등기소가 동일한 가나다협동조합과 가나다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명칭으로 간주되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등기예규에 따라 가능하나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2

자문

협동조합 등기 시 명칭에 영문을 병기할 수 있나요?

법인 명칭의 등기는 한글이 원칙이며, 영문병기는 예외사항으로 영문병기된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담당자의 판단과 관례에 따라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영문자체를 빼고 등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법인 명칭에 영문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한 후 한 칸을 띄우고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는 '에이비씨앤프렌즈 주식회사 (ABC & Friends Co., Ltd.)' 형태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등기예규를 준용하여 '애플협동조합 (Apple Coop)'으로 한자와 로마자 각각 구분하여 병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으로 병기하여 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그 대안으로 사업자등록증명 영문발급 시 희망하는 명칭을 기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등기소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같이 소비하려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명칭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의해 설립된 법인에만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단어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상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그 명칭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명칭)

- ①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도 명칭에 유사한 문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지점을 낼 지역에 우리 협동조합과 동일한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점을 낼 수 없나요?

지점을 설치·이전 하는 등기시에 동일상호 존재 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같은 이름의 협동조합이 있더라도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 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 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 설립준비

3. 정관

001

협동조합 정관에 주소를 지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주소란 원칙적으로 지번까지를 의미하지만,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까지만 명시할 수 있으나 도의 경우 기초지자체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주사무소 설치를 의결하는 총회의사록에는 세부 지번까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002

협동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규약과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규약 및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 규정입니다. 규약은 총회에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필수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므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규약 및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표준정관	규약(12)	규정(7)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지사무소 운영규정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합운영 및 사업 규약	조합운영 및 사업 규정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이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합원 가입 규약	

표준정관	규약(12)	규정(7)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조합원 제명 규약	
제18조(출자)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현물출자 규약	
제20조(지분의 범위)	지분 범위 규약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⑤ 그 밖에 출자금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출자금 감소 규약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경비 및 사용료 등 부과 규약	
제25조(과태금)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과태금 징수 규약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운영 규약으로 한다.	총회 운영 규약	
제43조(이사회 의결사항)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사회 운영 규약	위원회 운영 규정
제47조(임원의 선임)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선거관리 규정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원 보수 규정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직원 관리 규정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이용실적 배당 규약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추가사항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	

정관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이 무엇인가요?

정관은 협동조합 최고의 자치법규이자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징을 담은 근본 규칙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은 아래의 총 15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협동조합 정관필수 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	
① 목적	⑨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⑩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⑪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⑫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⑬ 해산에 관한 사항
⑥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2020. 10. 01 시행)	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정관이나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지만, 정관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의 범위에 적합한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본법 21조 2항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정관을 통한 조합원 자격 제한 예

000직원협동조합 정관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서 000직원협동조합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000직원협동조합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설립 당시 직원으로서 퇴직조합원으로 남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000협동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 자격 및 유형) ①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연합회의 회원과 업근채소류 등을 10,000㎡ 이상 경작하는 생산자 및 유통인으로 한다.

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각 유형별로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조금씩 다른데 그 내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조합원의 자격은 규약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 범위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정관으로 대강의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에 넣고 세부적인 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관을 통한 조합원 유형의 구분

사회적협동조합연대경제 정관

제8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조합원(인력부족 농가 및 단체) : 수작업을 요하는 과수,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 및 단체, 작목반 등
2. 생산자조합원(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자가용 소유자) : 관내 거주자로서 소유 차량은 현물출자하고 농작업 출퇴근 운송사업을 원하는 자
3. 생산자조합원(농작업 참여자) : 취약계층 등 농작업을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자
4.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6.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006

법 4

협동조합의 정관에 배당금지를 명시하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정관에 배당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비영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007

자문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정관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관작성일은 창립총회 일자가 되어야 하나요?

절차상 창립총회 이전에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작성일자는 총회 이전으로 기입합니다. 또한, 창립총회 일자가 정관작성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 반려 사유가 될 수있으니 유의가 필요하고, 작성된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수정이 된 경우에는 수정일을 병기해야 합니다.

008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정관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하게 됩니다. 기명날인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므로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하면 됩니다.

009

자문

정관 사본의 원본대조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인날인과 기명날인까지 마친 정관 원본을 복사하여 복사본 맨 앞장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설립시에는 이사장(혹은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설립 후에는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 합니다.



●○ 설립준비

4. 출자금 및 세금

001

법 22

출자금 1좌에 대한 규정과 조합원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도의 출자좌수 규정이 있나요?

협동조합의 총출자금 액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 좌 및 최소 출자좌수에 대한 부분은 정관으로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또는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천차만별이므로 총출자금액을 산정할 때는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향후 몇 년간의 수입지출규모를 추산하여 손익분기점이 넘을 때까지 조합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출자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출자액이 정해지면 현재 조합원 수와 앞으로 새로 받을 조합원 수를 파악하여 조합원 일인당 최소출자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조건

사회적협동조합 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이 높은 것은 유사의료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002

법 22

자문

건물이나 물건을 출자할 수도 있나요? 현금가액으로 환산하려면 어떤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양도가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상 기재가 가능한 동산이나 부동산,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한 노무나 신용을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물출자를 하

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에서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법으로 강제된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정관 혹은 규약을 통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평가액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물출자의 금액이 크거나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인(재고자산, 부동산 등의 경우) 혹은 회계사(채권, 주식 등의 경우)에게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003

 법243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양도·양수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지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수·양도를 권장하지 않으나, 총회의 의결을 받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한 법정서식은 없고,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개인 간 출자금 양수양도서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받는 사람의 권리는 총회 의결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00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세금감면 혜택이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조례제정 여부가 다르니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5

 자문

A협동조합이 2014년 3월 20일 설립등기를 완료했다면, 이후 발생한 지출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A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1월 30일 1천만원의 지출을 했다면,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그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즉, A협동조합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설립등기일이 3월 20일이더라도 1월 30일 발생한 지출은 비용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협동조합의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라면 1월 30일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월 30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하면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신고 및 출자금 납입 등의 과정에서 설립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의 의결 등을 통해 설립 경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면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A협동조합의 경우 1월 30일 지출은 물론 지난해 11월 10일 지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창립총회의 의결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계정 처리**

A협동조합의 경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설립등기 전 1월 30일 발생한 지출은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 통상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0일 지출한 비용은 ‘전기오류 수정손실’이란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전기오류 수정손실’이란 계정은 전년도에 발생한 지출을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 설립준비

5. 조합원

001

법20

자문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필요,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업체이자 결사체이므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가입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자연인과 외국인, 미성년자 또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여부와 기준

대상	여부	조건
자연인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미성년자	△	조합원으로 가입가능, 다만 가입 시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
법인	○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다만 법인조합원 가입 시 직무대행자 선임 필요
공무원	△	조합원 가입은 가능하나, 영리업무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임원 및 직원, 발기인으로는 참여불가

002

설립동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발기인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설립신고역할을 담당합니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창립

총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는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003

자문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소비자협동조합의 소비자 조합원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 ①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②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③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6조(겸직허가)
-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도 출자를 하거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임원 및 조합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협동조합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협동조합(법인)이 책임을 질 뿐, 소속 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산보다 많은 빚을 지고 상환하지 못하여 협동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임원이나 조합원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속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산의 사유가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저발기인수 부족으로 인한 1인 출자한도 30%를 초과하거나 구성원 변경에 따른 임원 변경사항을 신고·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실제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시·도지사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조합원 5인 미만인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내 조합원을 총원하여 5인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감독)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설립준비

6. 임원

001

법34④, 법92

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 법인이 임원도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합원의 자격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중에서 총회 선출의 절차를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가입의 절차를 통해 조합원이 되고, 선출의 절차를 거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법인에서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를 직무수행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002

법34④, 36②

자문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 법인이 임원일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법인은 결격사유조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판단은 직무를 수행할 자를 기준으로 조회하게 되므로 법인에서는 법인 대표자를 직무수행자로 선임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003

자문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던데 왜 그런가요?

협동조합의 법인조합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4항에 의거하여 임원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에서 제34조제4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을 준용하므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정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은 자연인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04

법44①

현재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수행중인데 타 협동조합의 임원직을 겸직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직의 겸직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재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타 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겸직은 가능합니다.

법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 1. 21.>

005

자문

개별법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겸직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협동조합의 직원은 임원직을 겸직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협동조합인 경우, 또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겸직금지의 예외사항으로 직원의 임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그 정수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표준정관례에서는 임원을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원의 선출

만일 정관에 조합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그 비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임원 전체를 외부인사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책임을 지며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와 조합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합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표준정관상 임원의 해임에 대한 요구는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가능한데, 정관의 동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조합원 1/5 이상으로 총회에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법상 내용으로 볼 때 해임을 위한 조합원 동의의 기준을 정관상 1/5 이상으로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1/5 이하로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소수 조합원의 동의로써 당초 임원을 선임한 총회 의결을 번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리라고 해석됩니다.

비등기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되나요? 또한, 비등기이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등기된 이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 내부적으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결권도 없습니다. 조합 내부적으로 비등기이사를 이사회의 성원에 포함시키고 의결권을 줄 수는 있으나, 대외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설립절차

1. 총회

001

법28⑤

자문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공고는 반드시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총회개최 공고방법을 정관(표준정관-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공고를 필수요건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공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1 대상의 SNS나 이메일은 공고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정관의 공고방법에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SNS나 이메일은 1:1 대상이 되는 통지 및 최고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을것입니다(표준정관-통지 및 최고방법).

002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결사항 중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협동조합의 준비와 설립 과정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협동조합의 경비 처리 방안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설립 비용을 다른 단체나 발기인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면 별도로 의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설립 전 예상 지출내역

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액의 4/1000,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0이며, 서울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울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액>

설립 등기	세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출자금의 1.44%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② 공증수수료

③ 등기수수료

④ 인감도장 제작비

⑤ 사무실 임대료 및 집기로

⑥ 기타 총회준비비용

※ ① - ④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협동조합의 사무실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03

자문

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 총회개최 공고일 7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총회개최 7일 전 까지 회의목적 및 안건을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지하게 되어있으므로 전원이 참석하더라도 법에서 제시한 공고기간을 지켜야합니다. 참고로 상법상 판례에 따르면 주주 전원이 총회에 참석했을 경우 총회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판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판례가 아니므로 총회의사록 공증시 총회절차를 무시하였다고 간주하여 공증을 거부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04

법30

창립총회의사록의 기명날인인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인감도장 대신 서명도 가능한가요?

총회의사록 기명날인은 의장 1인과 총회 참석자 중 선출한 기명날인인 3인 이상이 본인의 인감도장 혹은 서명으로 기명날인 할 수 있습니다. 서명으로 하고자 할 때는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회에서 기명날인인 또는 서명인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설립동의자 가운데 임원(이사 및 감사)으로 선출된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총회의사록 기명날인과 간인 방법

기명날인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장에 기명하고 날인하는 것이고, 간인 하나의 문서가 여러장으로 구성된 경우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 사이마다 걸쳐서 인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005

자문

창립총회를 공고했는데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요?

새로 창립총회 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 개별 설립동의자 모두에게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변경된 공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006

자문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용 위임장을 작성하는 위임인은 반드시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공증용 위임장이란 '공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전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으로 위임인은 본인이 총회에 참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설립절차

2. 설립신고

001

법15①

설립신고인은 누가 되어야 하나요?

설립신고는 발기인 중 1인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기인 대표가 설립신고를 수행합니다.

002

신고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포함해야 하나요? 수입과 지출 총액의 차이가 발생해도 되나요?

사업계획서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예산계획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입지출예산서상의 수입과 지출 총액도 일치해야하므로 수입지출예산서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는 지출항목 중 차기이월금 항목에 차액을 표기하여 합계액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003

조합의 정관 제61조 사업의 종류가 총 20개인 경우, 당 해에 실행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20개의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해야 하나요?

정관에 명시한 사업이라면 협동조합 등 사업계획서상 모든 사업 내용을 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연도에 수행하지 않을 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음' 또는 '2022년 사업 수행 예정' 명시하고,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입·지출 예산(안)이 작성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동조합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신고 수리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사전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설립절차

3. 공증

001

등기를 하려는데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증이 무엇이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창립총회 의사록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증인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증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청문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료와 함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합니다.

참고 공증에 필요한 기본서류

구분	내용
기본서류	1. 진술서, 확인서, 위임장, 조합원 명부 2. 임시총회 공고 3. 의사록 2부 4. 정관
추가서류	해당 의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사전 문의



●○ 설립절차

4. 설립등기

001

 자문

발기인 대표가 법인인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의 기명날인란에 법인명과 법인인감도장 대신 직무수행자 이름과 개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도 공증 및 등기가 가능한가요?

직무수행자는 법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임한 대리인으로 자연인 개인의 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명과 법인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002

 자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기타사항의 설립신고 연월일과 법인성립 연월일 중 어느 것을 설립일로 봐야 하나요?

법인의 설립은 법인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짜가 법인성립 연월일이며 이것을 설립일로 봅니다.

003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출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사장명의로 통장으로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또는 이사장이 직접 작성하고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임의양식)를 제출합니다.

004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등기 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물출자의 경우 은행 잔고증명서상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일 등기소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현물출자재산영수증(임의양식)과 출자금
이 납부된 은행잔고증명서(현물출자 제외)를 제출하면 됩니다.

005

자문

법인이 임원일 경우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법인이 임원인 경우 직무수행자를 선임하지만 직무수행자의 서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인임원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
니다.

006

자문

외국인 임원 선임 및 등기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임원을 선임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 유무에 따라 각기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등기서류를 참고하여 등기 및 공증을 준비하되, 공증사무소마
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외국인 임원의 등기서류

거주구분	인감신고유무	필요서류
국내거주	국내 인감신고 완료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3매)
	국내 인감 미신고	취임승낙서, 여권사본, 위임장 준비하여 취임승낙서 혹은 총회의사록 공증, 여권 사본은 따로 공증 필요
	국내 인감 미신고 (이사장으로 등기시)	취임승낙서, 여권사본, 위임장, 인감신고서, 주소증명서 준비하여 취임승낙서 혹은 총회의사록 공증 (* 주소증명서는 외국 본국의 집주소가 표시된 신분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거나, 해외에서 거주지 증명원이 있어야하므로 주의 요망)
해외거주	이사장이 아닌경우	취임승낙서, 여권사본, 위임장 준비하여 외국현지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 공문서에 대한 국내사용을 위한 확인절차를 폐지하는 국제 협약. 문서발행국의 권한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해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협약을 맺은 가입국에 한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가입국은 영사관 인증을
거쳐야 함.

007

자문

외국인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내국인은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바탕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게 되지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청에서 경찰청에 의뢰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범죄
사실경력만 조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 기간 외의 범죄사실이나 후
견개시 심판여부, 파산 사실 등은 조회가 불가능하여 진행하지 않습니다.

008

미성년자가 학교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등기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미성년자인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성년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
기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
습니다.

참고 미성년자 임원의 등기서류

구분	서류	작성방법	비고
친권자	미성년자보호자 동의서	친권자 모두의 개인인감 을 날인한 동의서 작성	친권자가 양친부모가 아 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를 통해 추가증명 필요
	친권자 인감증명서	친권자 모두의 인감증명 서 첨부(본인서명사실확 인서로 대체 가능)	
미성년자 본인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009

법인 설립등기 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주사무소 지사무소 일괄신청하는 경우, 지 사무소에 관할 등기소에는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나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일괄신청 하는 경우, 지사무소 관할 등기소에는 별
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사무소 소재지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서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각각 고지서를 수령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구분	납부방법
서울소재 협동조합	• 오프라인 : 관할행정관청 세금 담당과에서 고지서 수령 후 은행에서 납부 • 온라인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에서 납부
지방소재 협동조합	• 오프라인 : 관할행정관청 세금 담당과에서 고지서 수령 후 은행에서 납부 • 온라인 : 지방세납부사이트 wetax.go.kr에서 납부



●○ 설립절차

5. 사업자등록

001

사업자등록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법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002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면허(인가·허가·신고·등록 등)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중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조합원 개인의 면허는 법인 소유의 면허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인허가,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협동조합 법인 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인허가, 면허를 취득해야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003



자문

협동조합 사업자등록 시 조합법인 해당 여부를 체크하니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법인 해당 여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의 8개의 개별법 협동조합인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해당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발에 있는 컨테이너를 주사무소로 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 주소지에 컨테이너가 있고,登記부등본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증빙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세무공무원의 상황 판단에 따라 등록 가능 유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 개인명의로 협동조합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시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동조합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으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는 법인설립 이후 법인명의로의 계약서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변경절차

1. 변경신고

변경사항별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 설립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신고(관할행정청), 변경등기(관할등기소) 및 사업자등록증정정(관할세무서)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절차가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요.

참고 변경사항에 따른 변경절차

구분	변경절차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신고 →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증정정
명칭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이사장	○	○	○
이사장 외 임원	○	○	×
사업계획	○	○	○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	○	○	×
이사장주소	○	○	×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관변경	○	×	×

설립 이후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이며, 신고인란과 조합정보란에 기재되는 대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변경신고는 업무 집행의 책임을 가진 사람, 즉 이사장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신고인란에는 신고하는 이사장 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사장 아닌 자가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

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장 신규 선거 등으로 새 이사장이 선출된 경우, 변경신고시에 신고인 성명 및 법인의 이사장정보란은 변경된 이사장 명으로 작성합니다.

003

자문

명칭이 변경되는 총회의 총회의사록과 변경신고에 들어가는 정관 상단의 제목은 기존명칭과 신 명칭 중 어떤 것으로 써야 하나요?

변경절차 중 정관과 총회의사록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작성 기준

	변경신고	변경등기
정관	• 변경된 이름으로 작성 • 도장은 기존/신규 도장 함께 날인	• 변경된 정관과 도장으로 기명날인하여 제출
총회의사록	• 기존 이름으로 작성 • 기명날인은 3명	• 기존 이름으로 작성
신청서	• 변경사항으로 작성	• 변경사항으로 작성 (등기 위임장, 인감개인신고서 포함)

※ 공증서류 서식(공증확인서, 공동조합원 명부 등)에는 변경 전 내용으로 작성

004

자문

구청에 변경신고 없이 변경등기가 되나요? 변경신고 후 등기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고 변경등기가 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변경신고는 필수사항입니다. 행정상의 오류로 등기변경이 먼저 이루어진 사례가 종종 발생하나, 변경신고를 마친 뒤 등기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005

자문

서울시에서 설립한 후에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주사무소 이전으로 정관(표준정관 제4조 사무소소재지) 변경사항이 발생하므로 정관변경이 없는 관내 이전과는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정관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를 진행한 뒤 세부주소변경 사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전입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또는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006

법3

경기도에서 우리나라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서울로 이전하려는데, 서울에 동일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먼저 명칭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뒤에 주사무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절차

2. 변경등기

001

자문

이사장, 이사 사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이자 이사장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이사 사임등기 누락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사장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힐 때 이사 및 이사장직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이사장직만 그만두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위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되지 않은 이사직에 대한 사임유무를 결정하고 사임서를 제출하여 등기처리를 조합에 요청해야 합니다.

002

자문

이사장의 사임으로 이사장직이 공석인 채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두 차례의 총회로 이사장을 뽑고자 했으나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행하고 있는 사람을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 대행 등기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등기법상 직무대행 등기라는 항목이 없어 직무대행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법인의 경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에 따라 특별이사나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경우도 임원결원 등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조항이 협동조합에도 적용이 되기에는 실제 신청사례가 없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사장 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장 대행등기를 허가받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003

자문

주사무소 변경등기가 되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등기와 확정일자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려고 계약 체결 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등기와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나 선후 관계는 발생하게 됩니다. 주사무소 변경의 경우 변경등기가 되어야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하므로 정황상 변경등기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된 것 같습니다.

004

자문

우리 조합의 정관상 임원 임기는 2년인데, 등기부등본상 임원의 등기일이 2020년 10월이면 임기만료일은 언제인가요?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설립등기 시점에만 회사 설립일(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된 이후 변동으로 인한 임기 시작일은 등기부등본상 날짜가 아닌 취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3일에 취임한 경우, 2년 뒤인 2022년 2월 3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005

자문

2015년 임원 등기 이후 정관상 정한 임기가 3년으로 만료되었는데, 지금 동일인이 임원을 연임하겠다고 하면 중임 등기가 될까요?

중임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기만료 후 2주 내 등기를 해야 하므로 임기종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으므로 중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임기만료 전 중임 등기를 하게 될 경우는 중임이 아닌 취임으로 간주함으로 임기만료 전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절차를 거치고 임기만료일부터 2주 내 중임에 대한 등기를 처리하면 됩니다.

006

자문

이사장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이사장 주소를 변경하면서 해당 이사장 사임, 신규이사장 취임등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이사장 주소변경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해당 이사장의 사임 시 사임등기처리가 안 됩니다. 이사장 주소변경과 해당 이사장의 사임, 신규이사장의 취임등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시일을 놓치지 않고 처리해야 합니다.

007

자문

이사장 사임으로 임시총회에서 신규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에서 신규이사장 선출총회를 기존이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공증을 거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증은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사장 사임 시에도 기존이사장이 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이사장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총회진행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1)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 유고 시 직무 대행자 순서에 따라 총회 의장이 되어 총회에서 사임 및 직무대행 순서를 설명하고 진행한 뒤, 2) 총회의사록 공증 시 공증사무소에도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상황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서는 사전에 정관 작성 시 직무대행으로 인한 의장 순위와 총회개최 결과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08

법4③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지역에 지사무소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나요?

협동조합 또한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지사무소를 둘 수 있고, 지사무소 설치등기를 통해 주사무소와의 관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사무소 명칭을 지사무소, 지역본부, 지부, 지점 등으로 쓰는 것은 무방하며, 단순연락, 교육, 모임을 위한 장소라면 지사무소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사무소 설치시에는 관할 관청에 별도 변경신고는 진행하지 않으며, 변경등기신청서와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변경등기 하여야 합니다.(본점소재지에서 일괄등기도 가능).



●○ 변경절차

3. 사업자등록 정정

001

자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추가 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정관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 등본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목적에 없는 경우, 목적변경등기를 통해 해당 사업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한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002

자문

협동조합 본점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고 지점은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했습니다. 지점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본점도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점에서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본점의 고유번호증은 그대로 두고 지점에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면 됩니다. (지점 자체 코드를 가지고 기장)



●○ 변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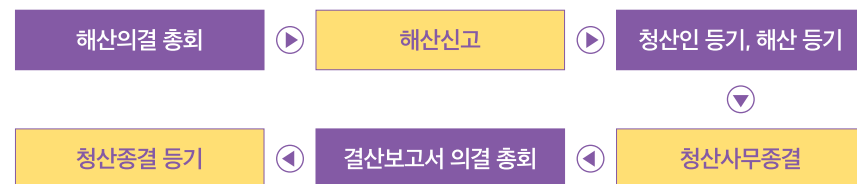
4. 해산 및 청산

001

사정이 생겨 협동조합해산을 하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의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멈추고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산은 해산한 법인이 재산을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해산의결총회 후 해산신고 및 해산 등기를 통해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종결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합니다.

참고 해산 및 청산 절차



* 청산인은 해산결의 총회 이후 조합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에 관한 재산처분의결 총회를 소집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승인해야 합니다.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두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채권자에게 최고하여야 합니다.

002

법57

설립 후 5년간 협동조합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연락이 끊겨 총회 성립이 안 되는데 협동조합도 직권말소제도가 있나요?

2020년 3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해산간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장은 사업을 폐지

하지 않았음에 대한 신고를 관보에 요청하게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이사장 주소로 해당 공지가 있었음을 개별통지 하고,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장은 그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을 폐지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그 신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고,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 협동조합 해산간주 절차



003

자문

해산의결 총회를 앞둔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환급은 언제 해줘야 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분환급 청구는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을 앞두고 있으므로 다음 회계연도 전 총회를 통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결 이후 채무 변제과정에서 출자금 반환 채무가 변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004

청산했더니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구성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청산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고, 유사한 목적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상급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국고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005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도 더 조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데, 해산하면 되나요?

기업의 파산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법인에는 그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채무가 전체 자산을 초과 상태가 되었을 때는 자체해산 대신 법원에 협동조합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진행비용(예납금)을 내야 하며,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대표자로서 선임되어 파산의 목적 범위에 서만 활동하게 됩니다.

006



자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채권자 보호 절차는 조합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고 등 채권자 보호 절차는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007



자문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 이의신청공고를 60일 이내 3회 하라고 되어있는데, 60일 내에서 3번을 각각 기한을 두고 해야 하나요?

60일 이내 3번이 아니라, 3일을 연달아 공고 후 마지막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되어야 유효한 공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08



자문

조합원이 아닌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청산인의 기준 및 선임에 대하여 정관, 규약 및 규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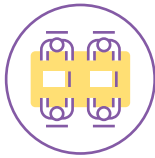
009



자문

청산인 등기를 했는데 이사 등기내역은 말소되었으나, 감사의 등기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등기가 잘못된 건가요?

감사는 경영자가 아니므로 이사 및 이사장과는 다르게 청산인이 등기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해산등기 후에도 등기기록이 남아있다가 청산종결등기시에 등기부가 폐쇄되면서 그 기재사항이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 변경절차

5. 조직변경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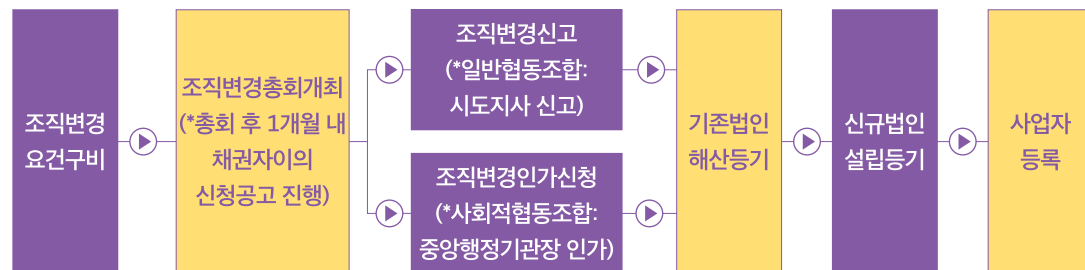
법60조의2

법105조의2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조건과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사전 요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둘째,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결의가 진행될 것, 셋째,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이 채워진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고 조직변경절차



002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민법상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그 성질상 의결 권한을 가지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을 그 존립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변경 가능 법인의 상세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직변경 가능 주체의 분류

구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대상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이하 '법인' 등으로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등

003

기존에 막걸리를 만들던 양조장(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새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나요?

조직변경 시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고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되지만, 기존의 면허나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조직의 변경에 따른 면허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막걸리 양조장의 경우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데,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 주세법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밀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밀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004

💡 자문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는데, 이 경우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만일 전환을 앞두고 퇴직하는 직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나요?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 조직의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동일 하게 유지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 상호 등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근로계약서 갱신은 계약 자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환을 앞두고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의무 또한 새로운 협동조합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조직변경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직변경을 앞두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평상시 직원 퇴사할 때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005

기존에 주식회사로 운영하다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대출 건이 있는데, 대출 건이 변경되는 법인에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

기존 조직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은행 등)가 채권의 승계를 승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한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내에 이의를 신청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하여야 하며, 최고의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006

💡 자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총회에서 8명이 변경승인을 한 다음, 바로 다음 안건으로 8명 중 2명의 지분 반환금액을 확정하고 탈퇴 처리해도 되나요?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금액 확정과 조직변경 승인을 한 총회에서 하는 것은 전환 요건 기준상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기를 조정하여 조직변경 총회 전 탈퇴 처리를 먼저 하거나, 조직변경의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07

💡 자문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임원을 새로 선출하게 되면 기존임원은 사임등기 해야 하나요?

별도의 사임등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조직변경이라도 정관승인, 임원선출, 신규법인 설립등기와 같은 설립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임원을 선출하여 설립등기하면 기존임원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신규임원이 신규임기로 등기됩니다.

008

💡 자문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시 10억 미만일 경우 총회 대신 서면 결의도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서면 결의를 할 경우에도 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상법 제363조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 결의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의 사록 대신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조직변경이 법인격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서면 결의를 통한 조직변경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면 결의 전 관할 등기소에 서면결의서로 조직변경 등기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면 결의는 공증이 필수가 아니라 간편함 때문에 서면 결의를 채택하는 때도 있으나, 서면결의서도 총회의사록에 준하여 공증할 것을 권장합니다.

009

상법상 법인격 내에서 조직변경 시 등록면허세는 48,240원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 시에는 405,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성질 자체는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것인데, 왜 등록면허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상법상 법인격 내에서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면 등록면허세는 48,240원이 부과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등의 사례에서 논의되었고, 그 사례가 반영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문화되는 과정에서 상법상의 법인의 변경사례만 명문화되어(유한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 그 외 조직변경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세율)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부: 납입한 주식 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 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 같다)
-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 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 원

010

법60조의2

조직변경총회 시 필수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직변경총회 시 총회 필수 의결안건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정관승인, 출자금 결정 및 사내유보금 정리 관련 사항,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의 필수사항은 반드시 의결하여 그 내용이 총회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그 외에 총회의결안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011

자문

협동조합 전환 시 기존법인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나요?

법인 등록번호는 변경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현행 사업자등록 발급체계를 고려할 때, 변경될 수도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리법인(상법상 법인)에서 영리법인(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이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리법인(주식회사, 협동조합)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은 사업자등록증상 동일한 번호 부여는 불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따

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업력의 인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구성원 명부 등을 통한 간접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12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할지, 아니면 조직변경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직변경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과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즉 법인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다른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으로 인한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재산과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고, 다만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세금(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 개인에 대한 소득세 등)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과 변경 후의 조직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의 이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셋째,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법인이 받았던 지원자격과 업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경제활동의 동기를 지속시키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13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사주, 즉 출자금을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소각하는 등 처분을 통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014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주 가운데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변경 전 해당 기준에 맞도록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의 지분(주식)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되므로, 이때 조합원 한 사람이 가지는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지분을 30% 미만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참고 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

구분	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지분정리 방법
1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이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	주식(지분)양도계약
2	자사주보유	협동조합은 자사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
3	질권 설정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3항)	피담보채무상환

015

법56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5항⑤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을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16

사회적협동조합을 사업에 따라 분할하려고 합니다. 분할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과 해당하는 출자금을 나눠줄 수 있나요?

“분할”이란 한 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분할 당사자 협동조합 간의 분할 계약의 주된 내용(신설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증가할 출자금 총액,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임원의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여 특정한 사업과 조합원, 출자금을 가지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운영일반

1. 기관

001

법23

법31④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위임의 절차와 위임 양식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운영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002

자문

2월 27일 총회를 위해 2월 19일에 총회개최공지를 했습니다. 19일까지 해당 총회에 대한 참석공지 받은 사람만 총회참석이 가능한 건가요?

7일을 공지 받지 않더라도 출자금 완납 시점에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권을 갖게 되므로, 해당 조합원이 약정한 출자금을 납부완료 하였다면 추가로 총회 개최를 통지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03

자문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협동조합에 이사장 해임 요구와 함께 총회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총회소집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고, 이사장의 해임 요구만으로 이

사장의 권한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해임 의안이라 하더라도 해당 총회의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했으나 이사장이 2주 내 소집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04

💡 자문

협동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서면결의에 관한 별도의 허용규정이 없으므로 서면결의는 불가능합니다.

005

⚖️ 법31

조합원이 너무 많아져서 총회를 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합원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가장 민주적인 운영기관입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가 성사되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회를 대신해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합니다. 대의원의 숫자는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이 1천 명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총회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신 의결하게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합병이나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음을 양지해야 합니다.

006

⚖️ 법31

💡 자문

현재 총조합원이 1,200명이고 대의원총회를 채택하여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대의원이 중간중간 사임을 표명하여 현재는 정족수 100명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3항에서는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를 통해 대의원 정족수를 채워야 합니다.

007

⚖️ 법31

대의원 선출을 꼭 총회에서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총회를 통할 필요 없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면 됩니다. 대의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의 임기, 선출 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사전에 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거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의원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온라인 선출보다는 대면 선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008

💡 자문

조합원 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을 구분하여 위임할 수 있나요?

조합원 총회의 참석권과 의결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한 총회 위임시 참석권만을 위임하거나 의결권만을 위임하는 행위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09

💡 자문

일반 회사원이 회사 근무와 별도로 직원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직을 맡을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이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를 확인하여 해당 회사의 사규에 이중 취업 금지조항이 있다면 직원협동조합에 직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고용된 직원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임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사규를 살펴보고 가능한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010

💡 자문

임원의 임기 중 이사장, 이사, 감사 임기를 별도로 둘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별로 임기를 정관에 명시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1

자문

2019년 정기총회를 하기 전에 감사가 사임 했습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기 전인데 감사보고서는 누가 써야 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감사의 직무대행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 회사나 비영리법인의 사례를 보면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전임감사가 그 일을 수행하거나, 수행이 어렵다면 임시총회를 통해 감사를 먼저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012

자문

임직원의 보수를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정관상에 명시했으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차로 총회에서 이사장 보수를 150만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300만원으로 증가시켜 승인을 했는데 승인의 효력이 있을까요?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임원보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표준정관에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 완벽한 법 해석은 어렵습니다. 농협법이나 상법의 경우 임원의 보수를 총회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내부규정이 없다면 이를 준용하여 보수의 변경도 총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안정적 조합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운영일반

2. 조합원

001

자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구두로 전달한 탈퇴의사는 언제부터 유효하게 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세부 내용 없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면, 탈퇴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2

자문

표준정관 제14조(제명)을 제14조(징계)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각 징계사유에 따라 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수정하였는데 유효한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통해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의 취지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003

자문

탈퇴하는 조합원의 밀린 회비는 탈퇴시 출자금에서 상계가 가능한가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는 출자금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004

법25

조합원의 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출석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은 제명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명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밟지 않고 의결한 제명 결정은 해당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005

자문

임원 해임이나 조합원 제명 시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나요?

제명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형사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조합원이 다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조합에서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명의 절차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다시 총회를 열어 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명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다면 사후 분쟁 시 대응하기 위해 회의록에 소명 내용을 기록하여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운영일반

3. 출자 및 배당

001

자문

임의적립금을 출자로 전환 할 수 있나요?

임의적립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명목적으로 막고 있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임의적립금에 대한 금액을 지분으로 확인한 후, 출자로 전환할 수 있을것입니다.

002

법26

탈퇴 시 출자금(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협동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탈퇴 즉시가 아니라 회계연도 이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포함해 지분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만 반환 가능). 다만, 환급 가능 여부나 그 시기,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 정관상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분 환급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해야 합니다.

003

법50

법정적립금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비분할적립금으로 사업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적립된 임의적립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004

자문

법정적립금은 반드시 현금화하여 별도의 통장에 보관해야 하나요?

법정적립금을 현금화하여 별도의 통장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적립금은 재무제표상 자본부에서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개념으로 예금이나 특정 실물자산 형태로 적립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005

자문

지분환급 청구권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지분환급 청구권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조합원의 권리이지만,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본 정관을 승인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합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 최대청구액을 출자금총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에 대한 해석에 의해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출자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중 정관을 변경하여 제한하게 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 조합원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006

자문

조합 운영이 어려운데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입신청서상에 아예 출자금 반환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될까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분할환급/환급유예 등의 조건을 걸어도 되는지요?

환급반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1:1 개별합의를 통해 지분환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넣은 뒤 실제 조합원 가입신청 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직접 사인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환급/환급유예에 대한 기간 등은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정관에 명시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007

자문

표준정관 제69조에 따르면 잉여금은 총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고, 그 세부 절차와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받지 않고 몇 년간**연락이 안되는 조합원들의 배당금액을 5년이 경과한 뒤 조합에서 흡수한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명시해도 괜찮을까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배당금지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와 동일한 5년의 시효를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008

자문

조합원 사망 시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나요? 승계가 불가능하다면 출자금 환급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사망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자동탈퇴 사유이므로 자격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출자금 반환은 민법상의 상속순서를 준용하여 1순위-유언장에 기록된 자, 2순위-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009

직원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이를 통하여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 아니라 운영비에 해당하며, 이러한 금액을 제하고 난뒤 결산을 통해 잉여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잉여금 확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 배당할 수 있는데, 이때 이용고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이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에 따른 배당이란 이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당한다는 의미이며, 조합원의 이용률을 정의하는 내용을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배당에 대한 규약).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이용률은 보통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010

법22조의2

협동조합도 법개정을 통해 우선출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우선출자의 세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출자는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진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2. 납입출자금 총액
-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11

 자문

설립시 조합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차입금 상계증자'라고 하며, 조합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원장이 준비되고 출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운영일반

4. 회계·세무

001

 자문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입이나 매출이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1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매입이나 매출이 없다 해도 무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신고를 통해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무실적이어도 무실적신고가 없는 기간이 지속될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002

 자문

어린이집 회계일정에 맞춰 정관상의 사업연도를 12월 결산에서 2월 결산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된 당해의 1,2월의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의 결산은 별도로 진행하고, 3월-다음해 2월로 결산하면 됩니다. 먼저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진행하고 세부적으로 문의하여 진행합니다.

003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도 가능한가요?

고유번호증으로 수익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반납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아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도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지만 수익사업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004

💡 자문

전년도 결손보전 및 잉여금처리 회계를 처리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0년을 예로 들면, 전년도 결손보전 및 잉여금은 2019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에 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으로 표기됩니다. 2020년 정기총회로 잉여금 처분안이 넘어가면 해당 총회에서 처분전이익잉여금-결손처리,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처분가능 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으로 결정 및 회계처리 합니다(결정기준일 : 총회일).

005

💡 자문

협동조합이 약 3억가량의 비상장주식을 기부 또는 무상출현 받는 경우, 기부자 및 협동조합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기부주체 및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와 종류가 달라지므로 완벽하게 일반화하여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부주체에 따른 과세여부 구분

구분	과세여부
협동조합이 기부받을 경우	차변 자산 : 매도가능증권(투자유가증권) 대변 수익 :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부 받을 경우	차변 자산 : 매도가능증권 대변 수익 : 기부금 수입 (증여세이지만 법인세로 과세될 수 있음)
개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자 입장 : 세금 없음
법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자 입장 :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하지만, 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손금 불산입 되고 법인세 납부

006

💡 자문

주사무소와 지사무소의 회계를 별도로처리 할 수 있나요?

주사무소와 지사무소 별도의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지사무소가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는 주사무소에서 법인 단위 일괄 납부하고, 지사무소에서는 원천세와 부가세 별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007

💡 자문

개인 조합원이 투자하여 지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 조합원이 지사무소에 자본금을 투자할 경우, 협동조합에서는 이를 차입금으로 처리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을 약정서에 명시해야 하고, 지사무소 운영에 따른 이익은 개인 조합원의 권리 포기사항 또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008

💡 자문

2년 동안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니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직권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법인세 미신고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권폐업과 관련된 세금문제 등은 세무서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009

💡 자문

조합원 자격 양수·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조합원 자격을 양수·양도하는 경우 출자금에 대한 총 3종의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세, 지방소득세)이 발생하고 각각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는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동일 금액 거래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세 가지의 세금 미신고 시,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의 10~20%, 지방소득세는 양도차액의 9~2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010

💡 자문

협동조합이 개인에게서 돈을 빌린(차입한)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차입은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인식되며, 차입에 대한 이자는 협동조합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가 되므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한 뒤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에도 후원이나 기부를 할 수 있나요?

일반 협동조합에도 후원 또는 기부를 할 수 있으나,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처럼 세법상의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부란 후원이나 찬조 등 타인에게 대가 없이 사회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기부는 기본적으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소득공제를 받는 등 세법상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 또는 후원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후원, 찬조, 기타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의 수익으로 처리되어 결산 후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참조).

참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금액의 15~3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이내에서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019.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운영일반

5. 인사·노무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사회보험은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소득보장 제도로 필수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스스로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 스스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근로자를 50인 미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 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직원이 아닐까?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의 직원겸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직원조합원이 이사장이 될 때는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고(퇴사하고) 이사장이 되므로 직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가 상근하면 직원이 되나요? 직원이 아니라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이사가 상근한다고 해서 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임원 중 상근임원으로 구분됩니다. 상근임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협동조합의 임원 보수규약(혹은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해당 임원활동에 대한 보수를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협동조합 운영시 4대보험 가입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가입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본인의 고용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¹⁾.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특례적용이 가능하고, 개정법 적용이 시행되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특례적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참고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가입유형

프리랜서는 고용된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유형이 달라짐

◆ 직장가입자

- ① 단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직장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됨
- ② 일용직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됨,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가 취득신고 진행

1) 국민연금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ro_nps/221705155621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고지되며, 고지금액에서 사용자(사업장)가 절반(4.5%)을 부담하고, 근로자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4.5%)이 공제되 납부됨

◆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게 되며,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월평균 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제48조의2 ⑤이하 생략)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60호]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나. 삭제 <2011. 1. 24.>
 - 다. 삭제 <2015. 4. 14.>
 -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성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004

 자문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장은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나 수당이 아닌 경영활동에 대한 위임계약의 대가인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이 받는 보수는 노동법과 무관하고,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수로 책정하면 됩니다.

005

 자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되면 2대보험 신고를 하고 급여처리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조합에서 둘 다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헌법상 근로권에 따라 개인의 취업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두 곳에서 근로자로 고용되거나, 개인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충실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복수의 소득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각각의 소득을 수령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소득신고(이사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및 신고, 직원일 경우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006

 자문

협동조합의 이사인데 타직장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임원 활동을 통한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등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이때 취업 상태는 보수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가 아니라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개시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협동조합이 사업을 영위(개시)하는 것으로 보여 취업상태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007

자문

조합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꼭 책정해 줘야하나요? 우리조합에 맞는 퇴직금 준비절차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운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협동조합이 폐업하게 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준비절차는 평소에 돈을 조금씩 모아두는 것(퇴직적립금)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조합의 회계상황을 고려하여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협동조합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서 퇴직금 마련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그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퇴직금 지불 시기를 연기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체불금액을 확인하고 그 지불시기를 정하는데, 지불시기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불각서의 성격은 퇴직금이 체불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 채권 행사를 뒤로 유보하기로 하는 약속을 문서로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직금 지불 시기를 미루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은 원칙대로 퇴직 시점에 전액 지급되어야만 하고, 그의 다른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즉, 협동조합이 어렵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 지급 시기를 당연히 지연시킬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해당 협동조합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008

자문

협동조합의 감사가 사무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에 '이사'와 '감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는 한 사용자로 분류되고, 직원에 대한 감사의 업무지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업무지시로 협동조합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관이나 규약, 규정에서 감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일반

6. 사업운영

001

청소용역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데, 파견사업도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역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청소를 원하는 자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통은 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시청과 B협동조합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B협동조합은 자신이 고용한 청소 노동자를 지휘·명령함으로써, A시청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A시청은 굳이 청소노동자를 지휘·명령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B협동조합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를 A시청이 직접 지휘·명령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청소노동자는 B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지만 지휘·명령은 A시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 관계와 지휘·명령 관계가 변하게 되면, 파견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견계약은 원청 사용자가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붙여 파견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경우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이긴 하지만, 파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파견근로자 제외)를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을 조합에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요양병원을 조합의 명의로 전환하여 운영해도되나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의료법상 개설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근로자 파견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원청 사용자는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청회사가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한다면 이것은 근로자 파견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든 파견 계약이든 1. 용역업무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가 아닌 경우 2. 근로자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경우 3. 파견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모두 불법으로 원청회사는 물론 파견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 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 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 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 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지사무소 설치를 하면 사업구역이 지사무소까지 확대되나요?

지사무소는 우리 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해 추가로 사업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사무소 설치를 통해 사업구역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업구역은 표준정관 제5조(사업구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지사무소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사와 지사의 관계성을 입증하기 위함에 불과합니다.

협동조합으로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가맹 사업을 하고싶는데,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 등록을 위해서는 첫째, 가맹사업거래사이트(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둘째, 정보 공개서 등록을 해야만 가맹사업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 사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향후 가맹점과의 분쟁이 생기거나 경제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 후 가맹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참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의 요건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지속적인 거래관계

005

자문

협동조합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이 중개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 공인중개사,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 제한 등)을 모두 갖추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006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협동조합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 중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뒤에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세부 기준 안내와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개정 2017. 10. 2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판단한다. 이때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이 큰 업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한다.
- <소상공인 범위>는 소기업에 포함되면서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소기업 중에서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소기업 중에서도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함)이어야 한다.

여성이 대표자인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조건과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부터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아래 여성기업 확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확인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2013. 6. 28., 2016. 7. 28., 2019. 10. 22.>

-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운영일반

7. 운영기타

001

💡 자문

조합 정관에는 A로 정함이라 해놓고, 규약에는 B로 정함으로 작성되어있는 경우, A와 B중 어떤 내용을 따라야 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 운영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정관에 정한 A로 해석하고 따라야 합니다. 규약은 정관의 하위규정이므로 정관의 내용에 반하는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002

💡 자문

협동조합의 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사록 보존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10년 이상 보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총회·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협동조합 운영에 중요한 서류이므로 해산 및 청산 전까지 영구보존 할 것을 권장합니다.

003

💡 자문

정관상 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이사장의 연임까지 포함해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임기 종료 전 총회를 통해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수정하여 연장할 수 있나요?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상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수정한 경우 현재 이사장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기가 2년인 경우 2019월 3월 15일 임기가 만료이나 정관변경을 통해 임기를 4년으로 변경한 경우 현재 이사장부터 적용하여 임기가 2021년 3월 15일까지로 변경됩니다. 단, 임원들마다 적용하는 부분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정

관 부칙으로 정하여 A이사장, B이사는 적용하고, C이사, D감사는 기존 임기에 따른다
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반드시 총회의사록상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004

💡 자문

강원도에서 강남구로 전입할 경우, 정관상의 부칙도 수정해야 하나요?

부칙은 수정이나 삭제하지 않고 해당내용을 다음 조항으로 추가합니다.

PART

2



사업운영을 위한 필요정보



협동조합 지원제도

사업운영을 위한 필요정보

●○ 사업운영을 위한 필요정보

1. 학원의 설립·운영	118
2. 커피전문점의 영업	122
3.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	126
4. 음식점의 영업	129
5. 어린이집의 설치	134
6. 특허의 등록	137

●○ 협동조합 지원제도

1.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41
2. 사회적협동조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43
3. 총회의사록 인증(공증)면제	146
4. 여성기업	148



●● 사업운영을 위한 필요정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금지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업종별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이 자주 묻는 업종별 요건에 관한 내용과 특허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 2020 협동조합 상담사례집에서 다루지는 내용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easylaw.go.kr)」상의 내용을 축약·일부 발췌한 것으로 더 많은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1 학원이란?¹⁾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²⁾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³⁾⁴⁾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 2020 협동조합 상담사례집에서는 학원, 교습소, 과외 등 관련 업종 중에서 일반적 형태인 학원을 중심으로 설립절차, 신고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소개합니다. 관련된 전체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 3)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 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 4)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자를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학원의 유형

구분	내용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①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 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3 학원의 시설 기준

학원은 교습과정 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⁵⁾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학원의 시설 기준⁶⁾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 명령⁷⁾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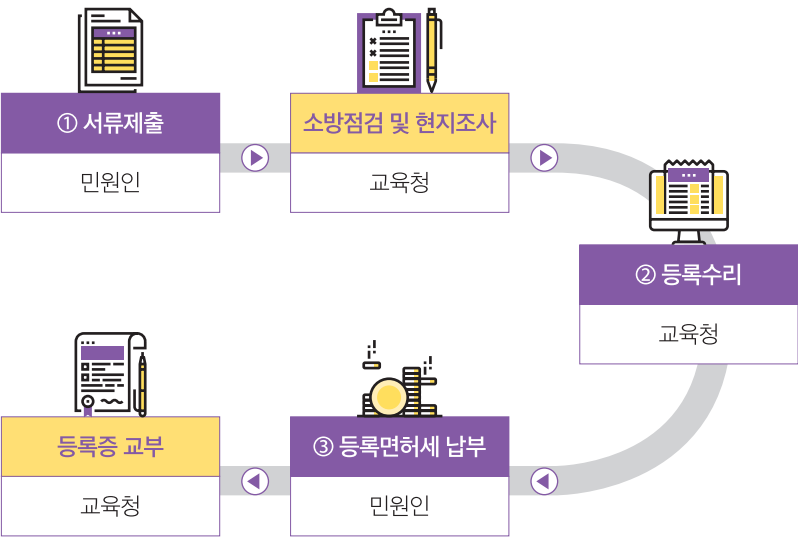
-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
-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
-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3호

※ 학원의 설립·운영 시 소방안전 관리를 위해 설치·유지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소방안전 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학원의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학원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⁸⁾해야 합니다. 교습과정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⁹⁾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류제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¹⁰⁾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8조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4항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참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

구분	서류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원칙(院則)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¹¹⁾
4	학원 시설평면도
5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등록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③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를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¹²⁾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12) 「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2. 커피전문점의 영업

① 업종의 구분

휴게음식점영업¹⁾이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② 영업개시 절차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①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²⁾해야 합니다.

구분	서류
1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함)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신고관청의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및 별지 제38호서식).

2)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3 시설기준

구분	내용
칸막이	커피전문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객실을 둘 수 있습니다.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 시설 등	- 바닥면적에 따른 안전시설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운송수단 등에서의 안전시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②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③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 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②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장은 연가·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장의 금지 설비 공연을 하려는 커피전문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커피전문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내용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장의 공동사용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①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생략되었습니다.

3.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

1 업종의 구분¹⁾

- 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③ 식품소분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2020 협동조합 상담사례집에서는 일반적 형태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중심으로 반찬가게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 영업시설, 영업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소개합니다. 관련된 전체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업종 관련 준수사항

① 반찬가게 영업

반찬가게 영업은 식품위생법령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을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②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③ 영업신고, 폐업

영업시설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 제5호가목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④ 건강진단

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⑤ 식품위생교육

반찬가게를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8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1호),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4호, 2019. 12. 11.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⑥ 반찬가게 영업자의 준수사항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처리, 공정한 영업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및 유독기구 등의 사용금지(「식품위생법」 제8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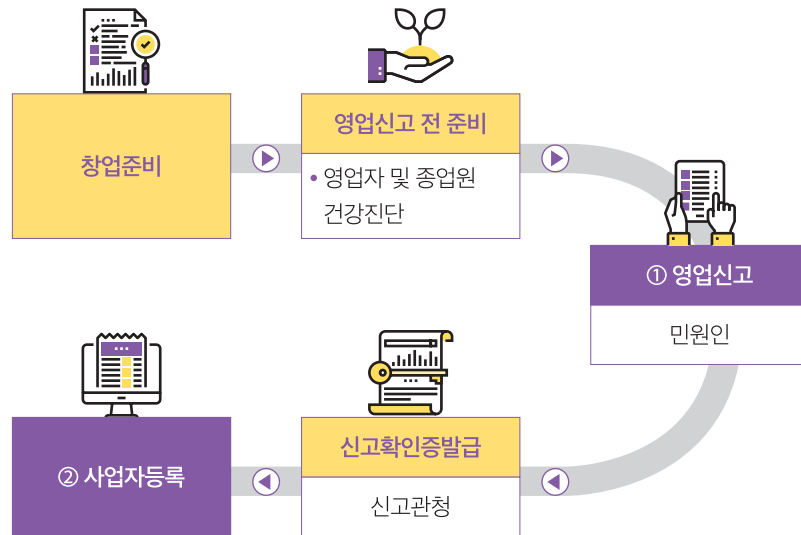
※ 화학적 합성품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8호, 2020. 3. 20.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 용도지역 :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 용도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점포계약 시 주의사항 : 반찬가게를 하기 위한 건축물(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7호)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영업을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점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별로 반찬가게시설이 허용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3까지).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확인가능

* 위의 관련법 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은 생략되었습니다.

3 영업개시 절차



① 영업신고 서류

구분	서류
1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5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미리 혹은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등록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음식점의 영업

1 영업의 종류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¹⁾을 말하며 세부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 협동조합 상담사례집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입니다. 관련된 전체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 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2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 ①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영업신고²⁾를 해야 합니다.
- ②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³⁾를 받아야 합니다.

3 공통시설기준

구분	내용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4)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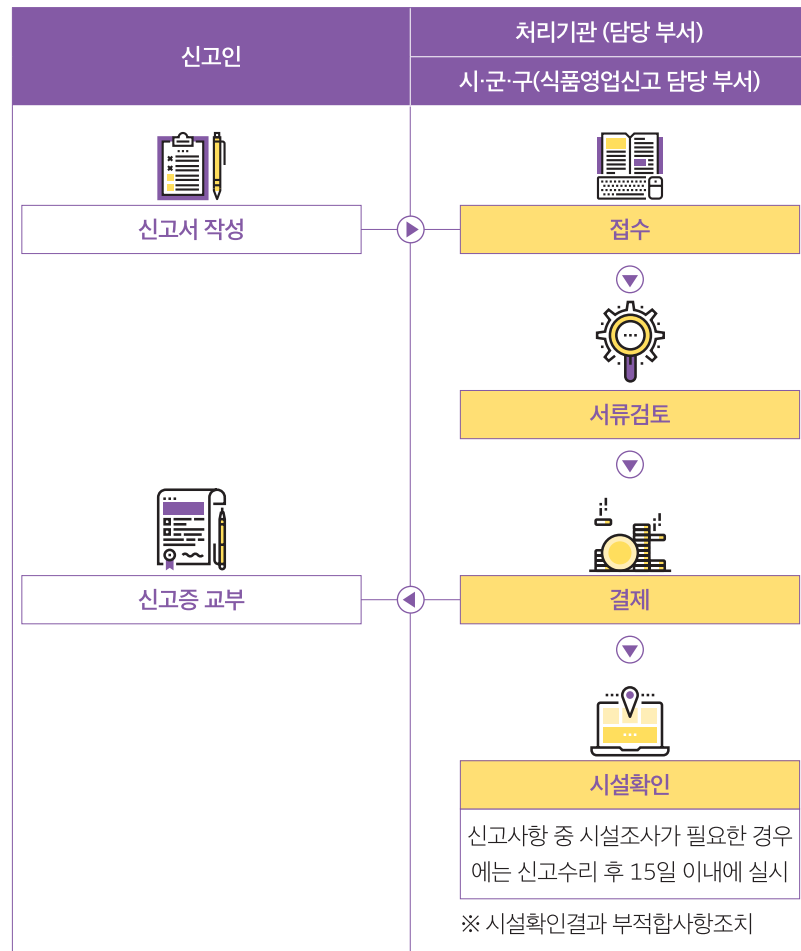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급수시설	1.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생략되었습니다.

4 영업신고 절차 및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⁵⁾해야 합니다.

- ☒ 휴게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위탁급식영업



5)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5 영업신고 서류

구분	서류
1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3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⁶⁾

※ 영업신고는 허가와는 다른 별도 절차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항(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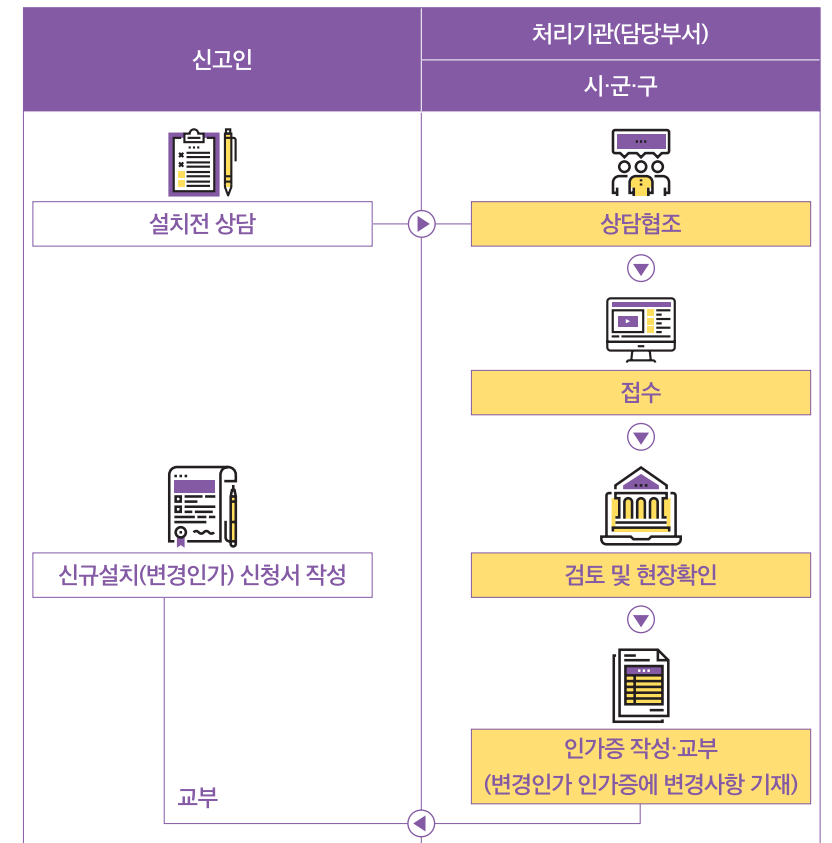
1 어린이집의 종류¹⁾

5. 어린이집의 설치

구분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이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이 출자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함)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의2호나목

2 어린이집 설치절차



①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전단).

② 어린이집 인가신청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구분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6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	경비의 지급 및 번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 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사업안내」(2020.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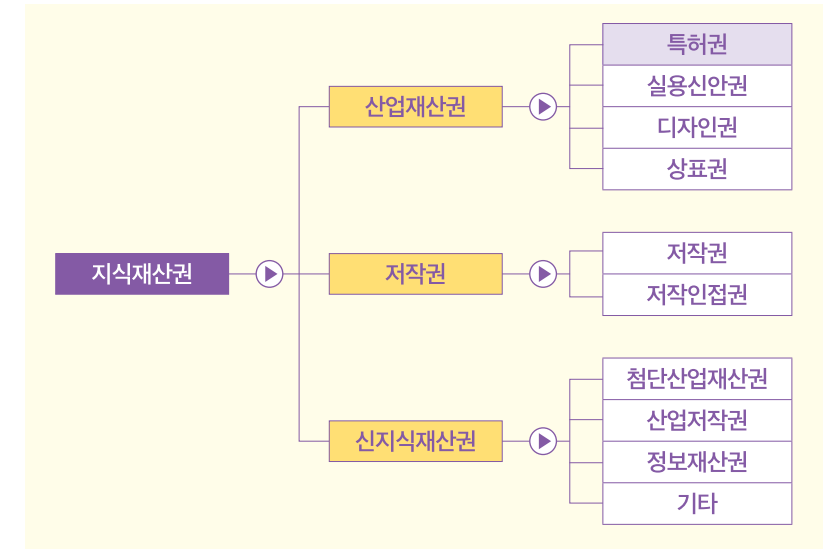
③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아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분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5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이 적힌 서류를 제출필요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해야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방문 하시기 국세정보, 사업자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특허의 등록¹⁾



①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②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분쟁 없이 추가적인 응용기술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④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처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7, 특허청

2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3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의 의미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²⁾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³⁾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⁴⁾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4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실용신안”이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하며,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 물품은 특허에 비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이념과 같습니다.

5 특허의 출원과 등록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願書)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2)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면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8, 특허청, 30쪽)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함.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하므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음.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음(『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8, 특허청, 30쪽).

4)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의미함

6 선행기술 정보의 검색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⁵⁾. 또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계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등록한 사람은 없는지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선행기술 정보란 발명자,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①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보검색

기관	웹주소	구분
한국특허정보원(KIPI)	http://www.kipris.or.kr	무료
과학기술정보통신서비스	http://www.ndsl.kr/	
웍스(WIPS)	http://search.wips.co.kr	유료
썬테크놀로지(브랜드워치)	http://www.brandwatch.co.kr	
위즈도메인(WISDOMAIN)	http://www.wisdomain.com	
마크프로	http://www.markpro.co.kr	

② 방문, 전화, 우편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요청

- 특허청 전자도서관(대전시)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042-481-5124)로 지식재산권 정보자료의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
- 특허청 서울사무소(☎02-568-6221), 각 지역지식재산센터(ripc.org) 자료열람실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 가능

5) 「특허법」 제42조제1항

※ 업종별 필요요건

업종 \ 요건	자격	입지 선정	점포 계약	상호 선정	자금 지원	영업 신고	사업자 등록	운영준수 사항	세금 납부	폐업 신고
미용실	○	○	○	○	X	○	○	○	X	○
피부관리실	○	○	○	○	X	○	○	○	X	○
메이크업샵	○	○	○	○	X	○	○	○	X	○
네일샵	○	○	○	○	X	○	○	○	X	○
세탁소	○	○	○	○	○	○	○	○	○	○
반찬가게	○	○	○	X	○	○	○	○	○	○
커피전문점	X	○	○	○	○	○	○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	○	○	X	○	○	○	X	○
음식점	○	○	○	○	○	○	○	○	○	○



○● 협동조합 지원제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법 보완 및 제도개선요구가 결실을 맺어 (사회적)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의 상황과 법인격에 적합한 지원제도 요건을 검토하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 제도소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5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참여대상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아래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법인)	• 지원사업 공고 해당년 1월말 채용 기준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시 자활 기업인정서 및 지원 대상 자활 기업확인서 필수제출
지원한도	연간 5천만원 이내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지원기간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내 최대 2년	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
자부담 비율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	2회차는 20%, 3회차는 30% 이상
접수기간	지자체별 공고일정 확인 필요	
접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시스템 접수	www.seis.or.kr

※ 위의 사업개요 및 절차, 대상은 2020년 공고기준이므로 당해연도 세부 기준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절차



3 참여 제외 대상

- 당해연도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 신청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사업개발비 신청 (사용)가능 및 불가 항목

사업비 신청가능 항목	사업비 신청불가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직접적 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물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대출이자), 각종 세금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2. 사회적협동조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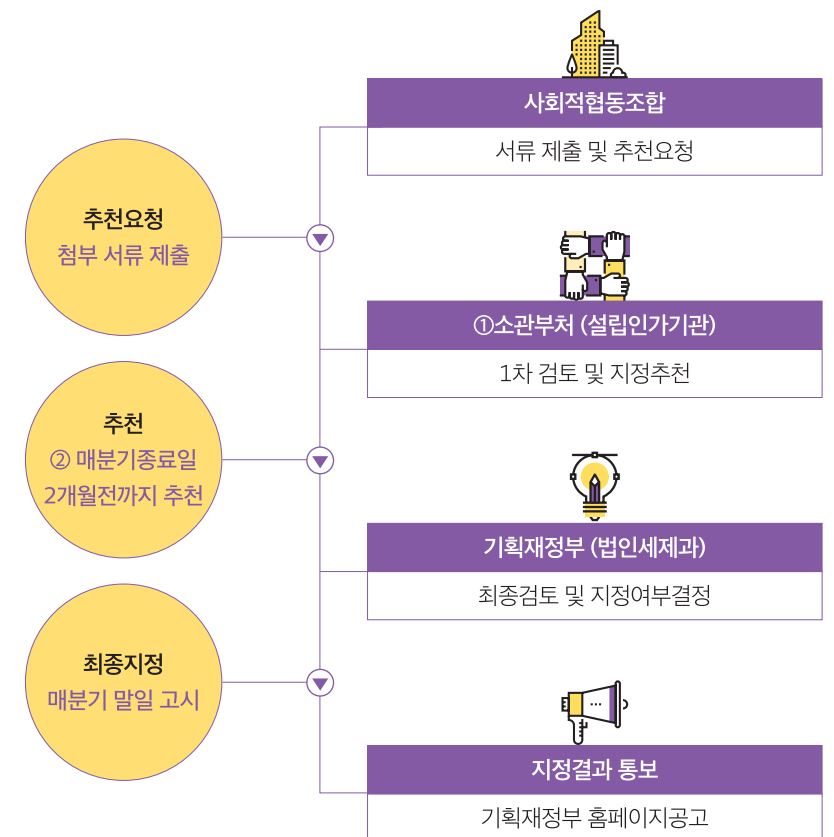
1 제도소개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1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으로 지정된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유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고용형'(해당유형을 혼합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3 신청절차



- ①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 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제출
- ② 추천기한 : 19년 기준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제출, 예외 불인정)

4 지정기준

구분	기준
1	「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 : 지역사회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3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홈페이지가 개설될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인정사항·기부금 관련 정보만 기입하여 제출)	주무관청이 작성하여 간인 날인, 간인 날인 누락시 추천서 반려
2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4	정관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최근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서류로 대체 ①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②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③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7	선관위의 유권해석 문서(정치활동을 했던 단체를 추천할 경우, 선관위에서 그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말함)	

6 지정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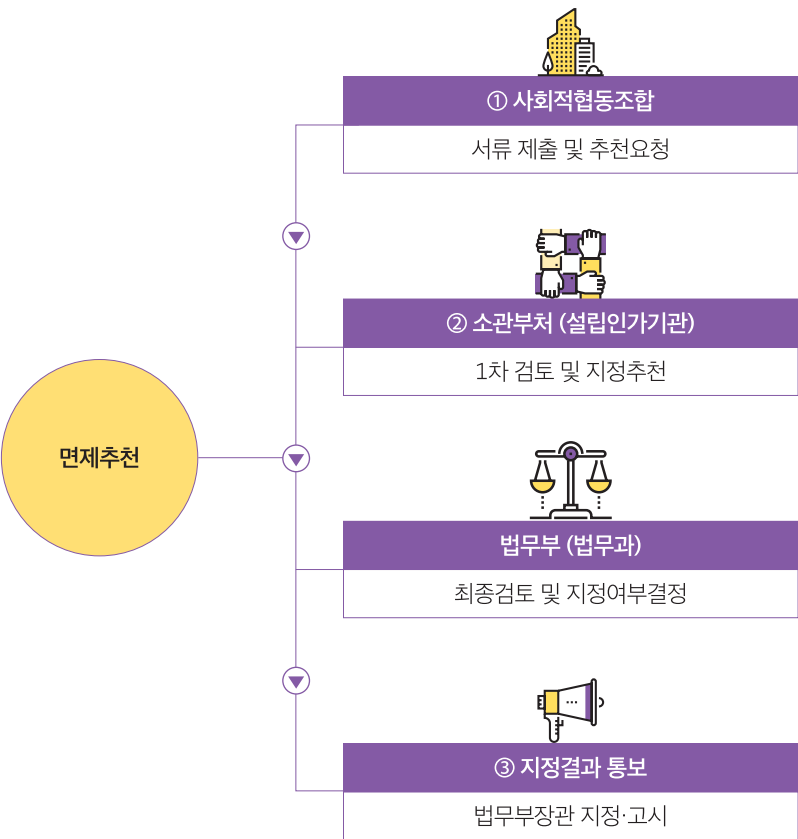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소급적용)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문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6)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3. 총회의사록 인증(공증)면제

1 제도소개

법인은 등기시 제출하는 총회의사록을 공증인에 공증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무부의 공증 면제 지정을 받는 경우 총회의사록 공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 '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 고시에 포함되면, 해당 협동조합은 등기신청 시 공증된 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증이 대체됨

2 지정절차



- ①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요청 공문 및 증빙자료를 소관 부처에 제출
- ② 소관부처는 공증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법무과)에 면제 추천
- ③ 공증면제 법인의 검색 : 법무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공증 > 자료실에서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확인

3 지정기준

- (법인격) 민법 제37조의3항(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의거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 (공익성)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진실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소관부처 추천공문
2	소관부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지정 추천 의뢰서(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조문포함)
3	설립인가증 사본
4	정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기타 참고자료 : 공익성 및 진실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소관부처에 문의)

※ 문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6) 또는 소관부처에 문의

4. 여성기업

1 제도소개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2019년 10월 24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2 신청절차



- ① 해당 협동조합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기업 정보를 등록
- ②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필요시), 조합원 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 각각의 명부마다 법인 직인 날인

3 신청기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가능

4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협동조합만 가능
 - 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 ②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 ③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이 조합원이 출자
 - ④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 ⑤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5 여성기업 혜택

- 공공기관의 제품 우선구매 대상 적용 :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물품과 용역 구매의 5% (공사의 경우 3%) 여성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
- 공공시장 진입 시 가산점 부여 : 조달청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공사, 지자체, 기타 일반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이 진입시 0.5점에서 1점까지 가산점 부여
- 여성기업 종합 지원센터 창업 보육실 입주 : 2년 미만의 여성기업의 경우 전국 14개 여성기업 종합 지원센터 창업보육실에 최대 3년간 입주
-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금리우대와 보증료 우대지원

PART

3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	152
제2장 협동조합	157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176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180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91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92
제7장 보칙	196
제8장 벌칙	197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204
제2장 협동조합등	207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211
제4장 보칙	216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220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시행일 : 2020. 10. 1.] 제2조

제3조(명칭)

-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

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6. 3. 2., 2020. 3. 31.>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3조

제4조(법인격과 주소)

- ①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 ②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4조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5조

제6조(기본원칙)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6조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7조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8조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9조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10조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10조의2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10조의3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11조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3. 31.>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시행일 : 2020. 10. 1.] 제11조의2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3조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4조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①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6조(정관)

-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16조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정 2020. 6. 9.>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2조의2(우선출자)

-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2. 납입출자금 총액
-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22조의2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9.>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20. 3. 31.>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17. 8. 9.>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29조

제30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제32조(이사회)

-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 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 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 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20. 6. 9.>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 1. 21.>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36조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36조의2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 1. 선전 벽보의 부착
 - 2. 선거 공보의 배부
 -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9.>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 1. 21.>

제43조(감사의 대표권)

-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 1. 21.>
-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 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 1. 21.>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④ 삭제 <2014. 1. 21.>

제49조의2(경영공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금소의 의결)

-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금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1.>
-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0. 3. 31.>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시행일: 2020. 10. 1.] 제56조제8항, 제56조제9항

제57조(해산)

-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57조의2

제58조(청산인)

-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 ①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 1. 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 1. 21.>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 ⑧ 시·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6. 3. 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익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10. 1.] 제65조

제66조(해산등기)

-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계속등기)

-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66조의2

제67조(청산인등기)

-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68조의2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감독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70조의2(감독)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70조의2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사·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79조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공제사업)

-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80조의2

제81조(사업의 이용)

-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68조·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84조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85조

제86조(정관)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1. 2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86조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 21.>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91조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92조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 1. 21.>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④ 삭제 <2014. 1. 21.>

제96조의2(경영공시)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⑤ 삭제 <2014. 1. 21.>
-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01조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02조의2

제103조(청산인)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 1. 21.>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 3. 2., 2020. 3. 31.>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 3. 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3. 2.>
-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 ⑩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105조의2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익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중전 제108조의2는 제108조의3으로 이동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08조의2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본조신설 2014. 1. 21.]

[제108조의2에서 이동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08조의3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 1. 조합원 수가 제8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2. 제9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1조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6. 3. 2., 2020. 6. 9.>

-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시행일 : 2020. 10. 1.] 제112조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제115조(준용규정)

-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

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 1. 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절 설립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2(설립인가)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2

제115조의3(준용규정)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3

제2절 회원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4

제115조의5(준용규정)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5

제3절 기관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6

제4절 사업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7

제5절 회계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8(준용규정)

- ①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8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9(준용규정)

- ①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9

제7절 등기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10(준용규정)

- ①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중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10

제8절 감독 <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중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11

제115조의12(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12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5조의13

제7장 보칙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시행일:2014. 7. 22.] 제116조제3항

제8장 벌칙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7조(벌칙)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시행일 : 2020. 10. 1.] 제117조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0. 10. 1.] 제118조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등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 2. 제22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4.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 5.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 2. 제49조제2항(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 3. 제49조(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 2020. 10. 1.] 제119조

부칙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 제37조제4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3항, 제76조 전단, 제79조 후단,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제3항, 제87조제4항,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4조제1항, 제101조제5항, 제102조제2항, 제111조제6항, 제112조제2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11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71조의2 및 제83조 후단(제15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 ①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2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1조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아니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자산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자산 또는 한정자산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항제1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주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시행일 : 2014. 12. 30.] 제2조

부칙 <법률 제14053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제11항, 제60조의2제7항·제8항,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면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항, 제56조제5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의2제7항·제8항 및 제71조 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 또는 조직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8항·제9항, 제80조의2의제3항·제4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4항·제5항, 제101조제8항·제9항, 제10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1조제4항, 제115조제2항·제3항,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등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6. 30.]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6. 30.]

제3조의3(심의회)의 운영)

-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4조(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 8. 29.>
-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⑤ 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제2장 협동조합등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 6. 30.]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지역특산물·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8. 29.]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 ①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 8. 29.>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1.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86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39호, 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㉖부터 <388>까지 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 [기획재정부령 제528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5. 6. 30.>

제4조 삭제 <2015. 6. 30.>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협동조합등은 다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신고확인증)

영 제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등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 ①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분할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분할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제528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결산 보고서의 서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23호의 개정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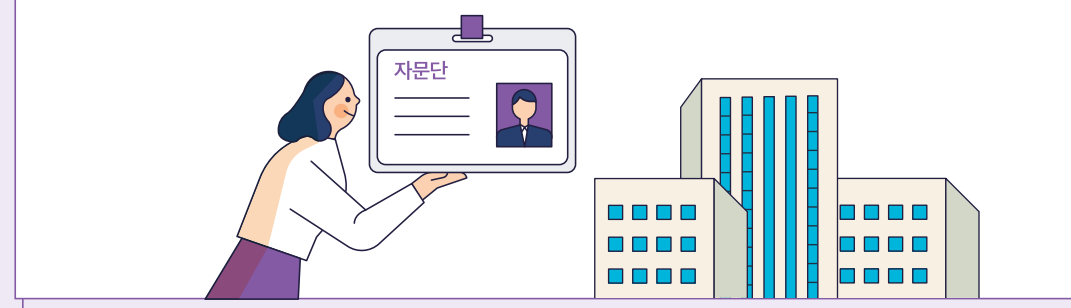


전문상담 자문단 소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법무, 노무, 세무, 법률 등 협동조합과 관련된 전문상담 자문단을 위촉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7년여의 시간 동안 분야 전문가 24명이 자문 위원으로 활동해주셨으며, 축적된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협동조합 상담사례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협동조합을 위해 애써주신 자문단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전문상담 자문단과 함께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2020 전문상담 자문단

성명	분야	소속
권오상 노무사	인사·노무	노무법인 의연
이선민 변호사	법률	사단법인 두루
이은정 법무사	법무	법무사 이은정사무소
이정섭 세무사	회계·세무	이정섭 세무사사무소
이종제 회계사	회계·세무	협동조합공작소
임선혜 법무사	법무	다름법무사법인
정순문 변호사	법률	공익법률연구소
최정환 가맹거래사	경영	꿈꾸는가게경영연구소





협동조합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무법인 의연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상 노무사입니다. 2011부터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하였고, 현재 소속된 노무법인 의연에는 2015년부터 결합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로 향하는 전문가 공동체'라는 모토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익히 듣고 봐왔던 터라 꼭 한 번 의연에서 일하고 싶었고, 그 기회를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자문 업무의 특징은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고, 협동조합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도 균질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나 임원이 사업경험이 있거나, 협동조합을 운영한 경험이 오래된 경우는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 심화된 이슈를 질의해오는 반면,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이슈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겠지만, 모든 협동조합이 비슷한 어려움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은 협동조합 전체를 보았을 때 대단한 비효율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모아 다른 협동조합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상담 사례집 발간을 강력 추천합니다.

권오상

노무법인 의연 부대표

공인노무사



협동조합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공익법률 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의 이선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공익을 위한 소송, 법률자문과 상담,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 사회적경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질의나 협동조합 당사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저의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 당사자들에게 법률자문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협동조합 기본법의 부족함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상담사례집이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저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연구하면서 협동조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활동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협동조합 상담사례집이 내비게이션이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회계·세무분야 상담
위원 이정섭 세무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이쿱생협에서의
강의를 통해 협동조합과 인연을 맺게 된 이후, 협동조합 관련
회계·세무 관련 강의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한 지 5년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5년간의 경험과 사례들,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증가세를 볼 때,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조직이나 전문상담
인력이 고군분투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협동조합의 일부만 이해하고 있을 뿐,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찾으면 정리된 자료와 양식, 협동조합 관련 책자
들이 있어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0년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또한 협동
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협동조합 당사자에게 매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느끼지만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은 일반 회사보다 어렵고 꾸불꾸불한 험한 길 같습니다.

2020년 협동조합 상담사례집이 처음가는 그 길에 내비게이션
이이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정섭

이정섭 세무사사무소
세무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영역의 주된 조직으로 우뚝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1일에 한국척서서비스협동조합의 설립컨설팅
과 신고부터 시작한 협동조합 일이 어느새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동조합 분야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커다란 성장과 발전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협동
조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선구적이었으며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으며, 회계·세무 지식과 경험이 협동
조합 관계자 및 당사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낍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재무적 위험에
빠진 협동조합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영역의 주된 조직으로 우뚝서기를 기원
합니다. 그 과정에는 또 누군가의 해안과 노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 협동조합사례집에 협동조합인들이 위기
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그 과정에서 마중물의
역할과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믿습
니다.

이종제

협동조합공작소 이사
세아회계법인 이사





협동조합이라는 나무가 모여 시민들의 심을 위한 푸르른 숲이 이뤄지는 미래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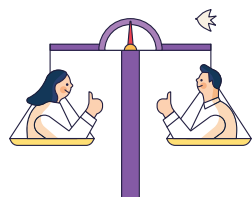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부작용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배태하고 있었던 모순이 두텁게 축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면서 구성원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위와 같이 노정된 사회적 한계에서 태동합니다.

맹목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조합원의 수요충족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결성된 시민결사체라는 협동조합의 본질로부터, 자본주의의 대안, 질 좋은 일자리, 경제 불황에서 위기관리능력, 공동체 회복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읽어냅니다.

아직은 협동조합이라는 나무를 심는 단계 이나, 나무를 심는 노력이 모여 시민들의 심이 될 수 있는 푸르른 숲이 이뤄지는 미래를 믿습니다.

부족한 역량이지만 협동조합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와 함께 열심히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예비, 초기 성장단계의 협동조합은 마치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가게경영연구소 최정환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인연을 맺고 전문상담 경영분야 자문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경영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거나 조직하는 활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물적 자원 안에는 법무, 세무, 노무, 조직 운영, 사업화계획, 비즈니스모델 수립, 판로개척, 지원 사업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경영의 정의 안에서 제가 6년간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가치실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예비 또는 초기 성장단계의 협동조합은 마치 흰 도화지와 같기 때문에, 전문상담 내용에 따라 흰색의 종이 위에 파란색이 칠해지기도, 때로는 빨간색이 덧칠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문단 활동은 참여자의 균형적인 시각과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행'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자문단, 그리고 협동조합이 함께 걸어가는 방향이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상생의 마중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정환

꿈꾸는가게경영연구소

가맹거래사

“중요한것, 관심가질 것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마치 민주주의 보다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것과 같다.
생각이 아니라 실천인 것이다.”

호세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1915-1976)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과 확산, 성장을 돕기 위해 2012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을 연 협동조합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본 센터 상담지원팀에서는 전국 유일의 전문상담 대표전화(☎1544-5077)를 운영하여 협동조합의 기초, 운영, 해산 및 청산까지 협동조합의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7년의 상담 기간을 밀거름 삼아 앞으로 도 협동조합을 연구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상담지원팀 : 이기대팀장, 이재림, 이은솔,
김선영매니저(왼쪽부터)

2020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초판1쇄 인쇄 | 2020년 09월 01일

초판1쇄 발행 | 2020년 09월 01일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기 획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606호

대표전화 | 02-383-8380 / 팩스 02-383-8388

홈페이지 | 15445077.net / seoulcoop.net

이 메 일 | 15445077@15445077.net

디자인·인쇄 | 장이와쟁이 070-4261-8129

비매품

본 출판물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